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23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 회의

일시 2020년 5월 22일(금) 16:0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교수회관 2층 국교련 사무국

전화: 064-754-2028

메일주소: newknupa@naver.com

제23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 회의

□ 개 요

- 일 시 : 2020년 5월 22일(금) 16:00 ~ 23일(토) 10:30
- 장 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20호)
- 참석대상 : 국교련 회장단 회(의)장 및 임원, 국교련 고문, 자문위원 및 정책위원

□ 22일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6:00	<input type="checkbox"/> 등록	
16:00~16:10	<input type="checkbox"/> 국민의례	김경호 사무총장
	<input type="checkbox"/> 성원보고	
	<input type="checkbox"/> 상임회장 인사말	오홍식 상임회장
	<input type="checkbox"/> 축사(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input type="checkbox"/> 감사패 전달	이형철 前상임회장
16:10~17:00	<input type="checkbox"/> 활동보고 <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보고사항 1. 예·결산 보고 및 감사보고서 보고 보고사항 2. 국교련 예산(안) 및 회비 부담액 보고사항 3. 정책위원회 업무 보고 - 박병욱(제주대, 국교련 정책위원) 보고사항 4. 국교조 교원노조법 보고 - 남중웅(한국교통대, 국교련 정책위원)	
17:00~17:10	휴 식	
17:10~18:00	<input type="checkbox"/> 논의사항 논의사항 1. 국립대학 교원보수체계 정상화 방안 - 김대중(충북대, 국교련 정책위원) 논의사항 2. 총장선거권에서의 직원 선거권 비율 - 김두진(부경대 교수회장) 논의사항 3. 국립대학 연구 결과물 미제출 관련 연구비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이한수(강원대 교수회장) 논의사항 4. 각 대학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지급현황 논의사항 5. 기타논의	회장단
18:00~18:05	<input type="checkbox"/> 폐회 (기념사진 촬영)	
18:05~19:30	<input type="checkbox"/> 이동 및 만찬	장소: 소담마루

□ 23일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8:00 ~ 10:30	□ 국교련 간담회 및 추후 일정 논의	회장단

[목 차]

순번	내 용	페이지
I	[활동보고]	1
II	[보고사항]	
	보고사항 1. 예·결산 보고 및 감사보고서 보고	15
	보고사항 2. 국교련 예산(안) 및 회비 분담액	27
	보고사항 3. 정책위원회 업무 보고 - 박병욱(제주대, 국교련 정책위원)	29
	보고사항 4. 국교조 교원노조법 보고 - 남중웅(한국교통대, 국교련 정책위원)	59
III	[논의사항]	
	논의사항 1. 국립대학 교원보수체계 정상화 방안 - 김대중(충북대, 국교련 정책위원)	77
	논의사항 2. 총장선거권에서의 직원 선거권 비율 - 김두진(부경대 교수회장)	100
	논의사항 3. 국립대학 연구 결과물 미제출 관련 연구비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이한수(강원대 교수회장)	116
	논의사항 4. 각 대학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지급현황	128
	논의사항 5. 기타 논의	129
IV	별첨 1. 국교련 회칙	133
	별첨 2. 회원교 연락처	137

인사말

존경하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회장님과 임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23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오홍식입니다. 사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과 신록이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도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있는데 매 순간 감사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이 자리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서울대학교 조철원 교수협의회회장님과 임원 교수님, 누구보다 바쁘실텐데 몸소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기꺼이 만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세정 서울대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대학들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11년간 지속되면서 재정 상태가 초토화되었고, 학령인구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정난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강사법이 8년만에 시행되어 대학들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대학혁신지원방향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발표되어 대학들은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2021 진단이 추진된다면 지방대학은 더욱 고사될 것입니다.

21세기 초현실 사회에서 전문화된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대학을 통제하는 정부, 혁신을 거부하는 대학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전국국공립대학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설립,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개정, 정당한 국공립대학 교원 급여 및 수당 체제 개선, 국립대학 제도 개선 등 많은 거시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현명하게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교련 회원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낸 영광스러운 국교련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고등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수의 지휘 향상을 위해 교수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설립되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구조조정, 전국국공립대학의 교육환경 개선, 교수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권익향상 및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철저히 존중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함께 한 만큼 해결되어야 할 논의사항과 보고 내용 및 각 대학의 현안을 경청해주시고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개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으로 교육부 사상 최초로 개강이 연기되었고, 모두 급격하게 바뀐 환경에서 강의하시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건강한 일상 보낼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국교련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오 홍 식

축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입니다.

존경하는 오홍식 23대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연합회 회장님과 새로 구성된 집행부 교수님, 그리고 각 대학 교수회 회장님,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한 비대면강의 및 실습 등으로 분주한 요즘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23대 국교련(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학가는 100년 내 최대의 위기라고 불리는 코로나19 감염 팬데믹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연구의 연속성이 소실될지 모르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 닥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각 대학도 최선을 다해 지식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또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교무-학생처를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각 학교와 연대하여 여러 대책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또한 힘을 모아 비대면강의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있으며,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본부에 전달해 주시는 등 대학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계심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중심에 교수협의회와 교수연합회가 있어 든든한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모두 전례 없는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감염사태에 따른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해야 함은 물론, 시민사회의 변화하는 시각에 걸맞게 교원의 직무규범과 비전임을 포함한 교원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러한 과제들은 학

문후속세대의 양성과 함께 앞으로 대학이 가져야 할 공공성 및 공익성 강화와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 대학의 자율권 확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지를 포함하여 당면한 여러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 하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각 대학 교수회와 평의원회 그리고 대학본부 간의 협조를 토대로 대학 간 연대 및 공동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각 대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들이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교련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당면한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수, 학생, 직원 어느 한 집단도 소외됨 없이 함께 매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국교련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국교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국교련 회원교 교수님들을 환영하며, 본 회의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오 세 정

감 사 패

경북대학교
이 형 철

귀하께서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를 높이 치하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0. 3. 5.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오홍식

색 지

색 지

I.

활동보고

활동보고 1. 공문발송_국교련 회원교 성금모금 협조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전제 회원교 교수회(협의)회

참 조

제 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원교 성금모금 협조 요청

1. 귀 대학 교수(협의)회 및 평의(인)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회원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이에 국교련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성금모금을 제안하는 바이며, 회원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금 된 성금은 국교련 명의로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금 은행계좌는 농협 302-0191-876201 (예금주: 오홍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문위원 함주현

사무총장 김경호

상임회장 오홍식

시행 국교련23-001 (2020.03.05.)

접수

(2020. . .)

주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교수회관 2층

전화 064-754-2028

E-mail: hampd@jejunu.ac.kr/ 공개

□ 성금기탁내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 이하 국교련)는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가 연대하여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교육,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연합체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41개 회원교가 힘을 모았습니다.

41개 회원교의 합의를 존중하여 국교련 2020년 예산 중 일천만원(10,000,000)을 성금으로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성금이 코로나19 극복에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원교 명단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
강원대학교 교수회	순천대학교 교수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	안동대학교 교수회
경북대학교 교수회	인천대학교 교수회
경상대학교 교수회	전남대학교 교수회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전북대학교 교수회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공주대학교 교수회	제주대학교 교수회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창원대학교 교수회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충남대학교 교수회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충북대학교 교수회
부경대학교 교수회	한경대학교 교수회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평의회
부산대학교 교수회	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협의회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평의회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한밭대학교 교수회

<코로나 19 대응 기부증서>



기 부 증 서

“나눔은 세상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기부자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기부일 : 2020년 3월 17일

기부금 : 10,000,000원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1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활동보고 2. 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정책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0년 2월 11일(화) 14:00
- 장 소 : 국교련 상임회장실
- 참석자 : 김용석 이사장 및 집행부
- 내 용
 - 대학진단 현안문제
 - 대학정책연구소 이사 구성, 정책 개발 등 국교련의 역할 중요
 - 국교련과 사교련의 연결 관계를 개선하여 활성화 필요
 - 교원단체 신청 중이며 교총만 허가단체
 - 고등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교원단체를 신청 중에 있음
 - 교육부 용역결과 고등교육은 배제되어 있으며 이는 교총과 상의 중임
 - 교원단체 신청을 올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으며, 112개 대학 회원교(7개 전문대학)과 단체교섭 및 교섭 협의 중임

활동보고 3. 23대 국교련 회장교 및 감사교 선정

국교련 공동회장교 선임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강릉원주대학교		○	○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감사	○	○
공주대학교	○(500인)	○(500인)	○(500인)	○(500인)	○
군산대학교	○	○	○	○	
금오공과대학교		○	○		○
목포대학교	○		○	○	
목포해양대학교		○	감사	감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감사
순천대학교	감사	감사	○		○
안동대학교	○	감사	○		○감사
창원대학교	○		○	○	
한경대학교	감사	○		○	○
한국교원대학교	○ (교육대학)	○ (교육대학)	○ (교육대학)	○ (교육대학)	○
한국교통대학교	○	○	○	○	
한밭대학교	○	○		○	○

<감사교 추인 과정_단체 대화방>

안녕하십니까?

제23대 국교련 사무국입니다.

1. 회원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22대 감사교로 서울과학기술대와 목포해양대학교가 국교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이어 제23대 국교련의 감사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4. 23대 감사교로 서울과학기술대와 안동대학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서울과기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사교로 수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감사교 선정은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2월 총회가 취소되어 부득이 단톡방을 통해서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추인절차는 찬성과 반대로 하고자 하며 <00대학교 찬성> 또는 <00대학교 반대>로 작성하여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1일과 12일, 국교련 감사교 선정에 관한 추인을 단톡방을 통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안동대학교가 감사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26개 회원교가 찬성해주셨습니다.

이에 23대 국교련 감사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안동대학교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교 추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보고 4. 공문발송_국교련 회비 납부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전제 회원교 교수회(협의)회 및 평의(원)회 회(의)장 및 임원

참 조

제 목 2020년도 국교련 회비 납부 요청

1. 귀 대학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국교련 회비 납부 요청을 드리오니, 아래의 계좌로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302-0191-8762-01 (농협은행)
 - 예 금 주 : 오홍식
3. '2020년도 국교련 회비 분담내역'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도 국교련 회비 분담내역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문위원 함주현	사무총장 김경호	상임회장 오홍식
시행 국교련23-002 (2020.03.20.)	접수	(2020. . .)
주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교수회관 2층		
전화 064-754-2028	E-mail: hampd@jejunu.ac.kr/ 공개	

활동보고 5. 공문발송_국교련 백서 및 연락처 송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전제 회원교 교수회(협의)회 및 평의(원)회 회(의)장 및 임원

참 조

제 목 21~22대 국교련 백서 및 회원교 연락처 송부

1. 귀 대학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국교련 활동을 담은 21~22대 백서와 국교련 회원교 연락처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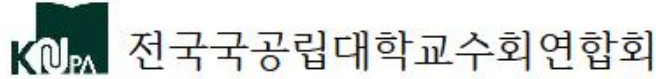
1. 21~22대 국교련 백서(압축파일).
2. 23대 국교련 회원교 연락처(PDF파일).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문위원 함주현	사무총장 김경호	상임회장 오홍식
시행 국교련23-003 (2020.04.09.)	접수	(2020. . .)
주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교수회관 2층		
전화 064-754-2028	E-mail: hampd@jejunu.ac.kr/ 공개	

활동보고 6. 공문발송_국가공무원 수당 조정 요구서 제출요청



수 신 전제 회원교 교수회(협의)회 및 평의(원)회 회(의)장 및 임원

참 조

제 목 국가공무원 수당 조정 요구지침 결과 및 수당 조정요구서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

1. 귀 대학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863(2020.3.31.)과 관련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지침을 첨부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회원교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수당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국교련 사무국(newknupa@naver.com)으로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지침 공문.
2. 2021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
3. 국립대학교원수당 조정요구서.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각1부.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전문위원 함주현

사무총장 김경호

상임회장 오홍식

시행 국교련23-004 (2020.04.10.)

접수

(2020. . .)

주소 (8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교수회관 2층

전화 064-754-2028

E-mail: hampd@jejunu.ac.kr/ 공개

활동보고 7. 공문발송_국교련 회의 취소 및 일정 안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전제 회원교 교수회(협의)회 및 평의(원)회 회(의)장 및 임원

참 조

제 목 제23대 국교련 '4월 회장단 회의' 취소 및 '5월 회의' 일정 안내

1. 귀 대학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전에 안내드렸던 '4월 회장단 회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3대 국교련 '5월 회장단 회의'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조와 더불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20년 5월 22일(금) 14시

나.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전문위원 함주현

사무총장 김경호

상임회장 오홍식

시행 국교련23-005 (2020.04.20.)

접수

(2020. . .)

주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교수회관 2층

전화 064-754-2028

E-mail: hampd@jejunu.ac.kr/ 공개

활동보고 8-1. (수정)공문발송_국교련 '5월 회장단 회의' 참석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 신 전체 회원교 교수회(협의회) 및 평의(원)회 회(의)장 및 임원
국교련 고문 및 자문위원,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참 조

제 목 제23대 국교련 '5월 회장단 회의' 참석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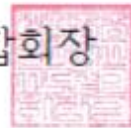
1. 귀 대학 교수(협의회)회 및 평의(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23대 국교련 '5월 회장단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교 회(의)장 및 임원, 국교련 고문 및 자문위원,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0년 5월 22일(금) 16:00 ~ 23일(토) 10:30

나. 장 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20호)

* 첨부 : 회의 세부일정표.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전문위원	한주현	사무총장	김경호	상임회장	오홍식
시행	국교련23-007 (2020.05.19.)	접수		(2020. . . .)	
주소	(8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교수회관 2층				
전화	064-754-2028	E-mail:	newknupa@naver.com / 공개		

색 지

색 지

II.	보고사항
------------	-------------

보고사항 1. 예·결산 보고 및 감사보고서 보고

가. 2019년 국교련 결산 보고 (2019.03.01. ~ 2020.01.31.)

□ 세입안

장	관	항목	세입(안)(원)	실제 세입(원)
일반회계	회비	2019년 회비	121,780,000	121,780,000
		전기 이월금	12,060,211	12,060,211
		특위 활동비 반납(박홍원)	1,301,879	1,301,879
		기차비 선지출 반환(권오현)	122,200	122,200
		은행이자	77,633	77,633
		국교련 UCC 공모전 홍보 거국련 지원금	1,700,000	1,700,000
		송금 오류로 인한 반환금(이준우)	100,000	100,000
소 계			137,141,923	137,141,923

□ 2019년도 일반회계(회비) 세출 내용

예산항목		세출(안)	집행액(원)	비고
항	목			
회의비	회의비	16,400,000	16,230,730	
사업비	대외협력비	1,000,000	441,800	
	정책개발비	5,000,000	5,300,000	
	대학정책학회비	5,000,000	5,000,000	
	개혁소위원회	5,000,000	5,044,600	
	법률자문회의비	5,000,000	-	
	행사비	10,000,000	5,466,880	
업무활동비	활동수당	18,000,000	16,500,000	
	대외업무추진비	1,000,000	-	
여비	여비	20,000,000	16,151,520	
인건비	인건비	29,186,950	26,441,800	
인쇄홍보비	인쇄비	13,000,000	10,134,000	
	홍보비	1,000,000	-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1,800,000	1,097,730	
	사무용품비	1,000,000	898,000	
	잡비	1,000,000	160,000	
예비비		1,755,140	-	
기타		-	22,300	기차 및 은행 수수료
합 계		135,142,090	108,889,360	

□ 2019년 3월-2020년 1월 세출 세부 내역

1. 회의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3.15.	교원급여체계 개혁소위 회의비	24,400
19.03.26.	국가교육위원회법 대응TF 회의비	26,000
19.03.29.	정책위원회 제6차 정책토론회 회의비	79,380
19.04.04.	제21대 국교련 제1차 임시총회 (회의 준비 등)	2,318,800
19.04.17.	국가교육위원회 간담회 사전 회의비	42,000
19.04.23.	정책위원회 제7차 정책토론회 회의비	181,500
19.04.30.	제21대 국교련 제6차 회장단회의 (회의 준비 등)	1,892,900
19.04.30.	교원급여체계 개혁소위 회의비	78,000
19.05.01.	교육부 차관 면담 회의비	38,000
19.05.08.	교육부 장관 면담 사전 회의비	52,700
19.05.10.	정책위원회 제8차 정책토론회 회의비	32,000
19.05.17.	제21대 국교련 제2차 임시총회 (회의 준비 등)	782,500
19.05.31.	정책위원회 제9차 정책토론회 회의비	203,500
19.05.31.	제21대 국교련 제7차 회장단회의 (회의 준비 등)	918,900
19.06.04.	제21대 국교련 제6차 회장단회의 발표비	400,000
19.06.12.	제21대 국교련 제7차 회장단회의 발표비	400,000
19.07.26.	정책위원회 제10차 정책토론회 회의비	126,300
19.07.27.	제21대 국교련 제8차 회장단회의 (회의 준비 등)	891,600
19.08.09.	교육부 폐지 홍보를 위한 국교련 UCC 공모전 회의비	19,500
19.08.30.	정책위원회 제11차 정책토론회 회의비	38,000
19.09.02.	제21대 국교련 및 제22대 국교련 집행부 회의비	256,000
19.09.16.	제21대 국교련 정기총회 (회의 준비 등)	2,408,550
19.10.04.	제22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회의 (회의 준비 등)	1,541,500
19.11.01.	제22대 국교련 제2차 회장단회의 (회의 준비 등)	1,681,890
19.12.02.	제22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회의 (회의 준비 등)	1,606,810
20.01.06.	제22대 국교련 TF팀 회의비	190,000
	회의비 총계	16,230,730

2. 대외협력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4.18.	조승래 국회의원 면담	61,000
19.04.19.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교수집담회 회의비	105,300
19.04.23.	교육부 면담 회의비	31,000
19.06.25.	교육부 · 교수단체협의회 회의비	151,500
19.07.23.	교수4개단체 교육부 간담회 회의비	28,000
19.08.16.	교육부 면담 회의비	65,000
	대외협력비 총계	441,800

3. 정책개발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3.26.	정책위원회 제4차 정책토론회 발표비 및 토론비	800,000
19.04.04.	정책위원회 제6차 정책토론회 발표비 및 토론비	400,000
19.05.22.	정책위원회 제7차 정책토론회 발표비 및 토론비	800,000
19.06.10.	정책위원회 제8차 정책토론회 발표비 및 토론비	500,000
19.06.12.	정책위원회 제9차 정책토론회 발표비	1,000,000
19.10.28.	제22대 국교련 정책위원회 워크샵 발표비 및 토론비	1,800,000
	정책개발비 총계	5,300,000

4. 대학정책학회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8.23.	2019년 대학정책학회비	5,000,000
	대학정책학회비 총계	5,000,000

5. 개혁소위원회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8.16.	교수노조대응 소위원회 회의비	44,600
19.10.17.	교수노조 개혁소위원회 국교조 세미나 연구용역 지원비	5,000,000
	개혁소위원회 총계	5,044,600

6. 법률자문회의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법률자문회의비 총계	0

7. 행사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3.26.	국교련 · 사교련 공동주최 토론회 (회의 준비 등)	1,107,000
19.07.30.	국교련 전임 회장단 간담회 (회의비 등)	1,712,000
19.10.19.	제22대 국교련 정책위원회 워크샵 (회의 준비 등)	935,860
20.01.13.	제22대 국교련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 (회의 준비 등)	1,712,020
	행사비 총계	5,466,880

8. 활동수당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3.-20.01.	상임회장 (이형철)	5,500,000
19.03.-20.01.	사무총장 (최인철)	5,500,000
19.03.-19.08.	정책위원장 (문병호)	3,000,000
19.09.-20.01.	정책위원장 (송기춘)	2,500,000
	활동수당 총계	16,500,000

9. 대외업무추진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대외업무추진비 총계	0

10. 여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3.08.	국교련 · 사교련 공동주최 토론회 참석	328,800
19.03.15.	교원급여체계 개혁소위 회의 참석	123,100
19.04.01.	3월 상임회장 (03/05 국총련 총장 면담 외 3건)	538,700
19.04.01.	3월 사무총장 (03/05 국총련 총장 면담 외 3건)	490,500
19.04.01.	3월 정책위원장 (03/08 연합토론회 외 3건)	550,000
19.04.01.	3월 전문위원 (03/08 연합토론회 외 2건)	268,300

19.04.01.	3월 기획간사 (03/29 임시총회)	150,000
19.04.01.	3월 김대중 정책위원 (03/08 연합토론회 외 2건)	300,000
19.04.01.	3월 김철수 정책위원 (03/15 교원보수체계개선소위)	121,600
19.04.30.	4월 상임회장 (04/10 국가교육회의 간담회 외 4건)	900,000
19.04.30.	4월 사무총장 (04/12 대학정책학회토론회 외 4건)	950,000
19.04.30.	4월 정책위원장 (04/04 국가교육회의 간담회 외 3건)	400,000
19.04.30.	4월 김대중 정책위원 (04/23 정책위원회)	100,000
19.04.30.	4월 송기춘 정책위원 (04/04 국가교육회의 간담회 외 1건)	137,600
19.04.30.	4월 전문위원 (04/26 제6차 회장단회의)	100,000
19.04.30.	4월 기획간사 (04/26 제6차 회장단회의)	100,000
19.04.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면담 사무총장 기차비	69,400
19.04.30.	교원급여체계 개혁소위 오송역 트램요금	6,800
19.05.03.	제21대 국교련 제6차 회장단회의 여비 (박홍원)	100,000
19.05.17.	제21대 국교련 제2차 임시총회 참석	287,400
19.06.04.	5월 상임회장 (05/01 교육부차관 면담 외 5건)	895,600
19.06.04.	5월 사무총장 (05/01 교육부차관 면담 외 2건)	356,500
19.06.04.	5월 정책위원장 (05/08 교육부장관 면담 외 5건)	600,000
19.06.04.	5월 전문위원 (05/17 제2차 임시총회 외 1건)	163,000
19.06.04.	5월 기획간사 (05/17 제2차 임시총회 외 1건)	206,500
19.06.04.	5월 김대중 정책위원 (05/10 정책위원회 외 2건)	250,000
19.06.04.	5월 김유경 정책위원 (05/31 정책위원회)	100,000
19.06.04.	5월 송기춘 정책위원 (05/31 정책위원회)	100,000
19.06.28.	교육부 · 교수단체협의회 참석	308,400
19.07.11.	국교련 전임 회장단 간담회 참석	48,900
19.07.22.	교수4개단체 교육부 간담회 참석	34,700
19.07.27.	제21대 국교련 제8차 회장단회의 참석	193,420
19.07.31.	7월 상임회장 (07/10 교총회장 취임식 외 3건)	430,550
19.07.31.	7월 사무총장 (07/11 전임회장단 간담회 외 2건)	230,550
19.07.31.	7월 정책위원장 (07/23 교육부 면담 외 1건)	200,000
19.07.31.	7월 김대중 정책위원 (07/26 정책위원회 외 1건)	150,000
19.07.31.	7월 송기춘 정책위원 (07/26 정책위원회)	50,000
19.07.31.	7월 전문위원 (07/26 제8차 회장단회의)	39,000

19.07.31.	7월 기획간사 (07/26 제8차 회장단회의)	39,000
19.09.04.	8월 상임회장 (08/16 교육부 면담 외 2건)	450,000
19.09.04.	8월 사무총장 (08/16 교육부 면담 외 2건)	450,000
19.09.04.	8월 정책위원장 (08/30 국교련 정기총회)	150,000
19.09.04.	8월 전문위원 (08/30 국교련 정기총회)	100,000
19.09.04.	8월 기획간사 (08/30 국교련 정기총회)	100,000
19.09.04.	8월 신입 전문위원 (08/30 국교련 정기총회)	150,000
19.09.04.	8월 김대중 정책위원 (08/16 교육부 면담 외 1건)	134,400
19.09.16.	제21대 국교련 정기총회 고문단 여비	400,000
19.10.04.	9월 상임회장 (09/27 제1차 회장단회의)	150,000
19.10.04.	9월 사무총장 (09/26 국회의원 면담 외 1건)	300,000
19.10.04.	9월 정책위원장 (09/27 제1차 회장단회의)	150,000
19.10.04.	9월 전문위원 (09/27 제1차 회장단회의)	150,000
19.10.04.	9월 기획간사 (09/27 제1차 회장단회의)	100,000
19.11.01.	10월 상임회장 (10/04 전국교수노조간담회 외 3건)	600,000
19.11.01.	10월 사무총장 (10/04 전국교수노조간담회 외 2건)	500,000
19.11.01.	10월 정책위원장 (10/18 정책위원회 워크숍 외 1건)	170,000
19.11.01.	10월 김대중 정책위원 (10/18 정책위원회 워크숍 외 1건)	100,000
19.11.01.	10월 전문위원 (10/25 제2차 회장단회의)	150,000
19.11.01.	10월 기획간사 (10/25 제2차 회장단회의)	100,000
19.11.11.	국교조 관련 회의 참석	48,800
19.12.02.	11월 상임회장 (11/11 국교조 간담회 외 1건)	127,600
19.12.02.	11월 사무총장 (11/11 국교조 간담회 외 1건)	63,600
19.12.02.	11월 정책위원장 (11/29 제3차 회장단회의)	150,000
19.12.02.	11월 김대중 정책위원 (11/29 제3차 회장단회의)	100,000
19.12.02.	11월 전문위원 (11/29 제3차 회장단회의)	20,000
19.12.10.	제22대 국교련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 항공권	611,800
20.01.13.	제22대 국교련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 택시비	7,000
20.01.31.	1월 상임회장 (01/03 제22대 국교련 TF팀 회의)	100,000
20.01.31.	1월 사무총장 (01/03 제22대 국교련 TF팀 회의)	100,000
	여비 총계	16,151,520

11. 인건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3.-19.08.	전문위원 (조은별)	10,470,900
19.09.16.	전문위원 퇴직금	1,745,150
19.09.-20.01.	전문위원 (박상국)	8,725,750
19.03.-20.01.	기획간사 (배원미)	5,500,000
	인건비 총계	26,441,800

12. 인쇄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4.01.	제21대 국교련 제1차 임시총회 자료집 인쇄비	385,000
19.04.01.	제21대 국교련 제1차 임시총회 현수막 제작비	60,000
19.04.29.	제21대 국교련 제6차 회장단회의 현수막 제작비	90,000
19.04.30.	제21대 국교련 제6차 회장단회의 자료집 인쇄비	700,000
19.05.03.	‘국내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약화’ 책자 제작	400,000
19.05.21.	제21대 국교련 제2차 임시총회 현수막 제작비	100,000
19.05.21.	제21대 국교련 제2차 임시총회 자료집 인쇄비	560,000
19.06.04.	제21대 국교련 제7차 회장단회의 자료집 인쇄비	350,000
19.06.04.	제21대 국교련 제7차 회장단회의 현수막 제작비	80,000
19.06.04.	상임회장 명함 추가 제작	60,000
19.06.26.	교육부 · 교수단체협의회 자료집 인쇄비	55,200
19.07.30.	제21대 국교련 제8차 회장단회의 현수막 제작비	50,000
19.07.30.	제21대 국교련 제8차 회장단회의 자료집 인쇄비	184,600
19.09.02.	제21대 국교련 정기총회 자료집 인쇄비	249,200
19.09.02.	제22대 국교련 전문위원 명패 제작	80,000
19.09.04.	제21대 국교련 정기총회 현수막 제작비	77,000
19.09.30.	제22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회의 현수막 제작비	50,000
19.10.04.	제22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회의 자료집 인쇄비	288,400
19.10.28.	제22대 국교련 정책위원회 워크숍 자료집 인쇄비	135,200
19.10.28.	제22대 국교련 제2차 회장단회의 자료집 인쇄비	282,800
19.10.28.	제22대 국교련 제2차 회장단회의 현수막 제작비	132,000
19.11.01.	제22대 국교련 정책위원회 워크숍 수정 자료집 인쇄비	740,000

19.12.02.	제22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회의 자료집 인쇄비	215,600
19.12.09.	책 '한국 국립대학의 길을 묻는다' 구입비	1,620,000
19.12.09.	책 '한국 국립대학의 길을 묻는다' 교정 및 편집비	1,000,000
20.01.09.	제22대 국교련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 현수막 제작비	70,000
20.01.13.	제22대 국교련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 자료집 인쇄비	376,000
20.01.15.	제22대 국교련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 자료집 추가 인쇄비	43,000
20.01.29.	국교련 팸플렛 인쇄비	1,700,000
	인쇄비 총계	10,134,000

13. 홍보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홍보비 총계	0

14. 공공요금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3.-20.01.	2019년 3월 - 2020년 1월 홈페이지 관리비	330,000
19.03.06.	교육부 공문 발송비	3,080
19.03.12.	목포해양대, 서울과기대 감사자료 택배 발송비	10,150
19.03.20.	감사자료 택배 반환비	5,000
19.04.03.	교육부 공문 발송비	5,920
19.04.11	제21대 국교련 제1차 임시총회 자료집 발송비	36,540
19.04.30.	경상대학교 의사봉 반납 택배비	5,300
19.05.20.	제21대 국교련 제2차 임시총회 자료집 발송비	34,070
19.06.05.	교육부 공문 발송비	2,890
19.07.03.	교육부 공문 발송비	2,890
19.07.30.	제21대 국교련 제8차 회장단회의 자료집 발송비	15,770
19.08.29.	교육부 공문 발송비	5,780
19.09.03.	제21대 국교련 정기총회 자료집 및 대학정책학회 책자 발송비	97,270
19.09.03.	UCC 공모전 홍보 포스터 발송비	82,800
19.09.16.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비	22,000
19.10.02.	국교련 의견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사무실 우편 발송비	38,240
19.10.02.	제22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회의 자료집 발송비	18,050

19.10.28.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관련 자료 발송비	2,890
19.10.29.	제22대 국교련 제2차 회장단회의 자료집 발송비	25,740
19.11.04.	제22대 국교련 정책위원회 워크숍 자료집 발송비	100,400
19.12.09.	제22대 국교련 제3차 회장단회의 자료집 발송비	45,180
19.12.13.	교육부 공문 발송비	9,480
19.12.16.	책 '한국 국립대학의 길을 묻는다' 발송비	70,300
20.01.15.	제22대 국교련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 자료집 발송비	12,350
20.01.31.	국교련 팸플렛 발송비	115,640
	공공요금 총계	1,097,730

15. 사무용품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3.08.	건전지 구입비	3,500
19.03.15.	A4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비	142,600
19.04.25.	방명록, 볼펜 구입비	19,500
19.08.29.	명찰, 볼펜 구입비	22,800
19.09.06.	프린터 토너 구입비	445,500
19.09.23.	명찰, 스티커 라벨 구입비	64,100
19.11.08.	사무용품(스티커, 펜, 테이프 기타) 구입비	200,000
	사무용품비 총계	898,000

16. 잡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19.04.30.	과학기술원 교수연합회 출범 축하화환	100,000
19.09.04.	故고현철 교수 추도식 근조바구니	60,000
	잡비 총계	160,000

17. 예비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예비비 총계	0

나. 감사 결과 보고

감사보고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귀하

본 감사인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2019년 03월 01일부터 2020년 01월 31일까지 집행한 지출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는 2019년도 국교련의 모든 수입 및 지출 항목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상기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사실과 일치하고 있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0. 2 . 10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감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의장 한원희

한원희

감사보고서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상임의장 귀하

본 감사인은 국교련회칙에 의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 까지의 결산에 대해 지출내역 및 영수증을 중심으로 회계부분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는 2019년도 국교련 수입 및 지출의 모든 항목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상기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사실과 일치하고 있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교련 임원 및 위원회 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있어서 관련 근거 자료(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출장 관련 공문)가 극히 일부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동일 지급 임원의 동일한 국교련 관련 행사 참여에 대해서 출장비 지급액이 동일하지 않은 것 등이 있다 (예 : 2019년 9월 4일 여비 등). 그리고 국교련 행사 후 주류를 포함한 만찬비용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예 : 2019년 8월 30일).

모든 지출이나 회계에서 예산을 잘 집행하였고 국교련 행사와 활동으로 보아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매우 잘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20년 02 월 11 일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감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신운호 

보고사항 2. 국교련 예산(안) 및 회비 분담액

가. 예산(안)

예산항목		지출대상	산출내역	예산액(원)
항목	목			
회	회의비	-총회 및 회장단회의 -정책위원회 회의 등	• 총회 및 회장단회의: 1,200,000원*12회=14,400,000원 • 정책위원회 회의 등 : 2,000,000원	16,400,000
사업비	대외협력비	-기관 단체 회의 및 간담회 등	• 기관·단체 회의 및 간담회 : 1,000,000원	1,000,000
	정책개발비	-정책위원 등	• 정책개발비	5,000,000
	대학정책학회비	-대학정책학회 회비	• 국교련 회원교 대학정책학회 기관회비	5,000,000
	개혁소위원회	-교원급여체계 개혁소위원회 -교수노조 개혁소위원회 -대학진단 개혁소위원회	• 교원급여체계 개발비	5,000,000
	법률자문회의비	-법률자문단 회의	• 법률자문단 회의비	5,000,000
	행사비	-워크숍	• 워크숍 : 2,000,000원*5회= 10,000,000원	10,000,000
업무활동비	활동수당	-상임회장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 상임회장 : 500,000원*12개월=6,000,000원 • 사무총장 : 500,000원*12개월=6,000,000원 • 정책위원장 : 500,000원*12개월=6,000,000원	18,000,000
	대외업무추진비	-경조사, 각종행사, 기관방문 등 -대외협력추진	• 경조사비, 정관계 면담, 언론사 간담회, 유관 기관·단체 방문 등	1,000,000
여비	여비	-상임회장,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전문위원 -정책위원(실비)	• 상임회장,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전문위원, 기획간사 등 : 100,000원*5명*30회= 15,000,000원 : 100,000원*5명*10회= 5,000,000원	20,000,000
인건비	인건비	-전문위원 -기획간사	• 전문위원 인건비 및 퇴직위로금 : 1,745,150원*12개월+1,745,150원(퇴직금)=22,686,950원 • 실무간사 인건비 및 퇴직금위로금 : 500,000원*12개월+500,000원(퇴직금)=6,500,000원	29,186,950
인쇄홍보비	인쇄비	-각종 자료집 -백서 -명함, 명패, 현판 등	• 자료집 : 400,000원*12개월=4,800,000원 • 백서 : 2,000,000원 • 현수막 등 : 100,000원*12장= 1,200,000원 • 명함, 명패, 현판 등 : 500,000원 • 홍보 책자 인쇄 : 4,500,000원	13,000,000
	홍보비	-광고, 알리미 등	• 광고, 알리미 등 : 1,000,000원	1,000,000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우편발송, 전화요금 등	•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100,000원*12개월=12,000,000원 • 우편발송 : 50,000원*12개월=600,000원	1,800,000
	사무용품비	-사무비품, 소모품	• 사무 비품, 소모품 구입 등 : 1,000,000원	1,000,000
	잡비	-수수료, 회환 등	• 수수료, 회환 등	1,000,000
예비비			• 기타	1,755,140
			소 계	
합계				135,142,090

나. 회비 분담액

국교련 2020년도 회비 분담액

연번	회원교명	교원수	시기	2020년도 회비분담액	비고	2020년도 회비 납부액
1	서울대학교	2,026	2014.4	6,0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7,000,000
2	부산대학교	1,188	2014	4,5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5,500,000
3	전남대학교	1,184	2014.10	4,5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5,500,000
4	경북대학교	1,169	2014	4,5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5,500,000
5	전북대학교	1,032	2014	4,5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5,500,000
6	강원대학교	964	2014	3,7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4,700,000
7	충남대학교	919	2013	3,7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4,700,000
8	경상대학교	811	2014.4	3,7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4,700,000
9	충북대학교	755	2014	3,7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4,700,000
10	제주대학교	619	2014	3,700,000	상임회장교(+200만원)	5,700,000
11	부경대학교	590	2015.3	3,7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4,700,000
12	공주대학교	555	2014	3,5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4,500,000
13	인천대학교	440	2015.3	2,700,000		2,700,000
14	서울시립대학교	406	2014.4	2,700,000		2,700,000
15	강릉원주대학교	384	2013	2,7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3,700,000
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63	2015.1	1,980,000	감사교(+50만원)	2,480,000
17	군산대학교	344	2016.4	2,700,000		2,700,000
18	창원대학교	333	2015.3	2,700,000		2,700,000
19	순천대학교	318	2013.4	2,7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3,700,000
20	한국교통대학교	316	2014	2,700,000		2,700,000
21	목포대학교	310	2013	2,700,000		2,700,000
22	안동대학교	272	2013.8	2,700,000	공동회장교·감사교(+100만원)	3,700,000
23	한국해양대학교	250	2014	1,900,000		1,900,000
24	한밭대학교	245	2013.4	1,9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2,900,000
25	금오공과대학교	211	2014	1,9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2,900,000
26	한경대학교	173	2014.4	1,9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2,900,000
27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66	2013.8	1,9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2,900,000
2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1	2014.9	1,900,000		1,900,000
29	목포해양대학교	107	2015.3	1,9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2,900,000
30	한국체육대학교	93	2014	1,100,000		1,100,000
31	한국교원대학교	206	2015	1,9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2,900,000
32	경인교육대학교	131	201.4	5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1,500,000
33	서울교육대학교	95	2015.3	500,000		500,000
34	대구교육대학교	93	2015.3	500,000	공동회장교(+100만원)	1,500,000
35	공주교육대학교	83	2015.3	500,000		500,000
36	부산교육대학교	82	2015.3	500,000		500,000
37	광주교육대학교	79	2015.3	500,000		500,000
38	춘천교육대학교	77	2015.3	500,000		500,000
39	진주교육대학교	71	2015.3	500,000		500,000
40	청주교육대학교	70	2015.3	500,000		500,000
41	전주교육대학교	58	2015.1	500,000		500,000
	합 계	15,713		97,280,000		121,780,000

보고사항 3. 정책위원회 업무 보고

- 박병욱(제주대, 국교련 정책위원)

국립대학교 행정직원 (국가공무원, 대학회계직원) 정책연구비, 학생지도비 수령의 위법성

■ 일부 국공립 대학 소속 행정직원의 정책연구비 수령의 위법성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 변상 등) 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 | |
|--|
| <p>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p> <p>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3항 (교직원의 임무)

- | |
|---|
| <p>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p> <p>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p> |
|---|

- 대학 내부의 “행정직원 등 직원”인 국가공무원이 대학회계 예산에서 정책연구비, 학생지도비를 수령하는 것이 위 법령들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기 전에 간단히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직원 등 직원”의 법적 신분과 수당체계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 국공립 대학 “행정직원 등 직원”의 신분 및 수당체계

○ “행정직원 등 직원”의 신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 하위법령인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직군: 행정, 직렬: 행정, 직류: 교육행정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임.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교정	교정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보호	보호			보호사무관	보호주사	보호주사보	보호서기	보호서기보			
	검찰	검찰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사무관	마약수사주사	마약수사주사보	마약수사서기	마약수사서기보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사무관	출입국관리주사	출입국관리주사보	출입국관리서기	출입국관리서기보			
	철도경찰	철도경찰			철도경찰사무관	철도경찰주사	철도경찰주사보	철도경찰서기	철도경찰서기보			
	행정	일반행정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행정서기	행정서기보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직업상담	직업상담	행정사무관				직업상담주사	직업상담주사보	직업상담서기	직업상담서기보		
	세무	세무					세무주사	세무주사보	세무서기	세무서기보		
	관세	관세					관세주사	관세주사보	관세서기	관세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무관	사회복지주사	사회복지주사보	사회복지서기	사회복지서기보	
통계	통계	통계사무관					통계주사	통계주사보	통계서기	통계서기보		
사서	사서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감사	감사		감사관	부감사관		감사주사	감사주사보	감사서기	감사서기보			
방호	방호경비					방호사무관	방호주사	방호주사보	방호서기	방호서기보		

- “행정직원 등 직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음
-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상여수당 (3종)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급)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급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4종)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특수근무수당 (4종)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종사자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업무대행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초과근무수당등 (2종)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
실비변상등 (4종)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일부 국공립 대학 소속 행정직원의 정책연구비 수령 현황

○ 국립 제주대학교, 국립 창원대학교 등 일부 국립대학 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행정직원 등 직원”이 정책연구 공모과제를 신청만 하면 사실상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대의 경우 직원 400 여명 + 조교 150 여명 등 약 500 여명 가량인데 2019년 이 중 382명이 수령.

☞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2항 “직무외 특수 연구과제에 대한 실비변상” 형식

☞ 전체 직원, 조교 중 약 70 % 이상이 수령한다는 점에서 수당 운영과도 유사

○ 제주대 직원 정책연구비 운영 사례

□ 2020학년도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방법						(단위 : 천원)
구분	영역별 지급한도액			총 지급한도액	비고	
	교육	연구	학생지도			
교원	일반	6,000	5,500	5,000	14,200	
	트랙					
	학술연구트랙		14,200		14,200	국내·외 전문논문 제출
직원, 조교			5,000		5,000	학생지도 및 정책연구 공모과제 지원

□ 직원, 조교 정책연구 공모과제

- 신청대상: 직원, 조교 중 참여 희망자
- 사업무소: 총무과
- 프로그램 내용

운 영 방 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분야의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통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향후 우리 대학의 정책방향과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

○ 사업비

연구참여 인원	정책연구비		인센티브
	1인당 금액	총액	
1인	300만원	300만원	과제 금액의 10%는 S, A, B 등급으로 평가하여 차등지급
2인	1인당 200만원	400만원	
3인 ~5인	1인당 150만원	450~750만원	

-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선급금 40%,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후 심사를 통해 3등급으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

※ 차등지급 내역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범위	30%	40%	30%
차등지급액	B등급과제 잔액분+ α^*	0	-10%

예시) ① S등급인 경우

- (선급금) 40%, (잔액) 60%
- B등급과제 잔액분 10% + α

② A등급인 경우 : (선급금) 40%, (잔액) 60%

③ B등급인 경우 : (선급금) 40%, (잔액) 50%

* α : 등급 평가 후 S 등급은 직원 전체 예산의 잔액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추가 지급 가능

- 제출자료 :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30page 이상, 12포인트, 줄간격 160기준

→ 위원회 심의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준비금 환수 및 잔액 지급 불가

- 위 정책연구비 지급의 근거로 대학 본부 측에서 제시하는 법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교육부)

- 「제주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 지급지침」

■ 일부 국공립대학에서 대학내 대다수 행정직원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8조상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

-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연구비는 소속기관의 장(대학총장)이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한다면 정책연구과제를 부여하고 행정직원인 교육행정직류 국가공무원에게 실비변상을 할 수 있을 것임.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연구비가 국립 제주대학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위한 특수과제가 아니라 특정 직역, 즉, 전체 행정직원 등 직원 (국가공무원, 대학회계직원)에게만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수당의 성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이고 해당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즉, 일단 생각해 보기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70 % 이상이 수행하는 정책 연구가 과연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2항이 정한 “특수한 연구과제” 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
-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발주 기준으로

가. 정책연구의 필요성, 나. 해당 법 조항의 요건에 맞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특수한 연구과제일 것, 다. 정책연구자 선정시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칠 것, 라. 정책 연구를 한 이후 그 내용에 대한 공개 및 평가환류가 이루어질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과연, 행정직원 등 직원 70 % 이상 수령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할당하면서 정책연구의 필요성, 정책연구자의 연구역량 등 자격,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공개 및 평가 환류를 하였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고, 국가공무원인 행정직원들이 나눠먹기식 수당 수령을 위하여 이와 같은 상식을 벗어난 정책연구 공모과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듦.

■ 행정직원등 국가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정책연구를 「대학회계법」 상 연구비 명목, 연구비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

- “행정직원 등 직원” (고등교육법 제15조 제3항)인 국가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수당 수령시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 수당규정 의 체계를 따르게 되는데, 교수로 대표되는 교원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인 국가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 수당규정 체계를 따르되, 교원은 이 체계와 별도로 고등교육법상 본연의 임무인 교육·연구·학생지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임무 범위와 관련하여 대학회계법을 따를 수 있을 것임.
- 또한, “행정직원 등 직원” 은 그 임무특성상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 (5급

이하),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특수업무수당¹⁾ 등 각종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무엇보다 대학회계법에 따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대학회계법 제28조)는 원칙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과 관련된 교원의 임무로부터 도출 되는 것인바,

이와 관계없는 직종인 “행정직원 등 직원” 이 본연의 임무 (고등교육법 제 15조 제3항)와 관계없이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수령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행정직원 등 직원” 이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는 정책연구에 해당 되는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실비변상)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실비 변상을 위한 수당재원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상 교육·연구·학생지도와 관련된 대학회계 자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이 중의 불법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 대학회계로 구성되는 정책연구비의 수혜대상을 대학의 교수, 시간강사 등 교원이 아니라 (연구역량도 검증되지 않고 고등교육법상 연구를 임무로도 하지 않는) 직원과 조교로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국가공무원법 상 국가공무원법 제48조상 정책연구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남.

■ 교육부 및 “행정직원 등 직원” 인 대학내 국가공무원이 정책연구비 운영의 근거로 삼고 있는

1) 교육부 "2019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발췌. **2020년도 기본지침에서는 직원들이 특정업무수당 명목으로 학생지도비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사업비로 편성해야 됨.**

③ 특정업무 경비

가. 경비성격

○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나. 기준액

○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액 (월)
감사	감사업무 담당(과장 이하)	80,000 원
예산	예산업무 담당(국장 이하)	150,000 원
교직원 단체	교직원단체 업무담당(과장 이하)	80,000 원
재무결산	재무결산 업무담당	100,000 원
여론·동향	여론·동향 담당(팀장·과장)	100,000 원
학생지도	총장이 정한 자	300,000 원 이하

※ 주

1) ‘학생지도’를 제외한 특정업무경비는 총괄부서 직원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으로서 직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만 편성

2) ‘학생지도’를 제외한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편성할 수 없음

3) 각 국립대학은 교직원 간 합의 후 ‘학생지도’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과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학생지도비용’ 제도 중 한 개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 (두 개의 제도를 병행 운영할 수 없음)

4) 각급 기관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적정 인원을 편성

대학회계법 제28의 문제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직원 등 직원”인 국가공무원은 대학회계법 제28조는 그 수령 대상을 “교직원”으로 함으로써 교원이 아닌 행정직원 등 직원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이라 할 것임 ←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

○ 이런 비정상적인 대학회계법 제28조 입법의 계기는 대학회계가 기존에 기성회 기금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기성회비가 문제가 된 당시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및 대법원은 대학 행정직원의 연구비 명목 기성회비 수령은 임무 관련성이 없어 적법하지 못하다고 밝힌 바 있음.

■ 참고 기사

연합뉴스 2013-09-16 자 기사. (송고시간2013-09-16 13:43)

강원지역 국립대 직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 반발



"국립대 기성회비 수당 폐지 반대"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교육부의 국립대 공무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원대 공동대책위 소속 직원들이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비상 총회를 열고 정부 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지방기사 참조>> 2013.9.16. rae@yna.co.kr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교육부의 국립대 공무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원지역 국립대 직원들이 총장실 점거 농성 등을 벌였다.

행정직원과 조교, 기성회 직원 등 강원대 공동대책위 소속 직원 300여 명은 16일 오전 10시 30분께 대학본부 앞에 모여 비상 총회를 열고 기성회비 폐지에 항의하며 교육 당국을 규탄했다.

강원대 공동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대학등록금 폭등의 원흉이라는 듯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자부심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IMF 시절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상여금은 50% 삭감해 공공근로에 투입했을 때도 정부 정책에 순응했지만, 이번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불평등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수당이 지급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총회를 마친 직원들은 대학본부 3층 총장실을 항의 방문해 40여 분간 복도에 서 농성을 벌였다.

공동대책위 집행부 일부는 신승호 총장을 20여 분간 비공개로 면담하고 내일(17일) 월급 일에 앞서 기성회비 지급을 촉구했다.



총장실 복도 점거한 교직원들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교육부의 국립대 공무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원대 공동대책위 소속 직원들이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대학본부 3층 총장실을 항의 방문해 복도를 점거하고 기성회 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기사 참조>>
2013.9.16

rae@yna.co.kr

신 총장도 직원들에게 "기성회비 문제는 올해 안에 법적인 변화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총장협의회도 뜻을 같이 한다"면서 "구성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체 조항 등에 대해 고심 중이니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거 농성을 마친 직원 대다수는 오후 업무에 복귀했으며, 집행부 등 일부 관계자들이 대학본부 건물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갔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일부터 대학본부 앞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으며, 정문과 후문에서는 점심때와 퇴근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강릉원주대 또한 이날 오전 11시께 직원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내 해람문화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총장을 면담했다.

강릉원주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달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직원들의 입장과 건의 내용을 총장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학교 측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번 일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일부 관계자들이 내일 정오까지 총장 접견실에서 자리를 지키고 단식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춘천교대는 직원 총회를 했으나 총장실 점거 등 단체 행동은 진행하지 않았다.

법률신문 2014-10-16 자

국립대 기성회비로 행정직원에 연구비 명목 주던 수당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 중단 정당

중앙지법 "노무와 직접적 관련 없어... 지급 요구 못해"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2014-10-16 오전 9:40:49

국립대가 등록금 기성회비의 일부를 행정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던 관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모씨 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전산주사 등으로 근무하는 직원 143명이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소송(2013가합5576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기성회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지만 제공하는 노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직원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해 온 성격의 금원에 불과해 기성회 내부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직원들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성회비의 징수 자체는 물론, 기성회비의 사용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며 "일부 국립대학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학교가 수당 지급을 중단한 이상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에 근거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닌 행정 직원들에게 연구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강씨 등 매달 연구비 명목으로 50~8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아온 이들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였다"며 지급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 2015년 6월 대법원의 대학 기성회비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등]

◇ 피고 기성회들이 원고들로부터 납부 받은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받았는지 여부(소극)
 이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이 영조물인 ○○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위 2015년 대법원 판결)²⁾은 **교육역무 (즉, 교육, 연구, 학생지도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및 교육시설의 제공에 한정된 목적성 경비로 기성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

법 제정 이래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도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교수로 대표되는 교원의 임무로 명확하게 못박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 (최종심)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2나19910 판결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0가합117721 판결

○ **대법원은**

- **교원의 경우** 기성회비를 위 교육역무와 관련하여 목적성 경비로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 **행정직원의 경우** 2014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취지와 같이 (2013가합 557641) 행정직원의 본연의 임무범위를 벗어난 연구비, 학생지도비라는 명목으로 이를 대학회계에서 수령할 경우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임.

○ 따라서, 행정직원인 국가공무원들에게 사실상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되는 정책연구비 및 학생지도비는 고등교육법 제15조, 서울 중앙지방법원 및 대법원 판결취지를 크게 벗어나 위법한 것임.

○ 대학본부에서 그 형식을 “사업비” 명목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직원 등 직원인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조항 및 위 관련 판결에 따라 연구 및 학생지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사업비로 집행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 또한,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 행정직원인 국가공무원도 연구, 학생지도 명목으로 대학회계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대학회계법 제28조 (“**교직원**”) 자체도 타 법령과 의도적으로 체계정합하지 않게 제정된 것으로 탈법이며,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

■ **교원으로서의 시간강사, 연구교수, 기금교수**

▶ 2019년 2학기 이후 소위 시간강사법 시행 (고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개정)으로 시간강사, 연구교수, 기금교수의 연구역량 제고,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시간강사 등 그룹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이 정하는 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를 담당하는 그룹이므로 학생지도비 및 교육연구지원금을 받아야 할 정당한 대상자로 보아야 함.

※ 독일의 경우 연구교수, 기금교수 등 비정규직 교수, 그리고 시간강사를 학생과 전임교수 사이의 학문적 중간구조 (Akademischer Mittelbau, Wissenschaftlicher Mittelbau) 로 인정하고 있음
학문 후속세대이자 학문적 중간구조인 시간강사, 연구교수, 기금교수 등의 정당한 임무 범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내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헌법 및 고등교육법상 정당한 임무 당사자가 아닌 행정직원 등 직원 (국가공무원, 대학회계직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 위법이며 대학회계 예산의 낭비이기도 함.

▶ 따라서, 위법성이 강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경부터 일부 국공립 대학 (제주대, 창원대 등)에서 새로이 신설하여 행정직원 등 직원 (국가공무원, 대학회계직원)에게 지급한 정책연구비는 전액 회수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연구비는 특별한 목적, 필요성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2항: 특수과제) 없이는 행정직원 등 직원에게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고등교육법 제15조 임무조항 및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위반하여

행정직원 등 직원(국가공무원, 대학회계직원)에게 지급된 학생지도비도 전액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해프닝으로 보고 향후로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

- ▶ 여기서 보전된 금전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간강사법에 따른 시간강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 부록: 대학회계법 “교직원” : 교원 - 직원 - 대학회계직원 논란 참고 기사

한국대학신문 2015.3.25. 자

“국립대 교수 연구비 실적 따라 차등지급, 직원은 금지”

국립대 재정회계 규정 26일 입법예고…교직원 처우 악화 우려 현실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이후 교직원 처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대 재정회계 규정) 제정안을 25일 공개했다. 제정안은 26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입법예고될 제정안에는 앞으로 국고와 등록금 등을 통합 운영하는 국공립대 대학회계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 지급기준이 포함돼 있다. 교수의 경우 각 대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지급계획과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했다. 직원의 경우 일반직과 기성회에서 전환된 대학회계 직원 모두 교육연구비 지급 자체가 금지된다.

또한 대학회계 직원의 채용절차와 근로조건, 임금 또는 퇴직 등에 관한 인사권은 각 대학 총장에게 부여해 재정 여건과 업무 필요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위원회에는 총 정원에 관한 사항에 한해 의결을 얻도록 했다.

상위법인 국립대 회계법에서는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는 폐지했지만 35조에서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재원으로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제정안은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회계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대학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결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을 바탕으로 각 국공립대는 자체규정을 마련한 뒤 대학 재정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정위원은 국립대 회계법에서 교수, 직원, 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한 학교구성원을 비롯해 대학측 당연직 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11명에서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의결된다.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위원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나 대학 운영의 중요 정보 유출 등 우려가 따를 경우에 한해 재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근거를 뒀다.

각 대학 총장이 재정·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개정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처리결과 역시 학교 홈페이지에 함께 공포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이밖에도 △예산·결산에 대한 사항 △수입·지출의 원칙 △재무보고서·재무제표의 내용과 작성 방식 △장부와 서식 등 국립대학이 복식부기로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포함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부대신문 2015. 4. 13. 자.

재정회계법 시행령 예고에 국립대 교직원들 반발

김유진 기자 승인 2015.04.13 01:04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재정·회계법> 세부 규정인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재정·회계법>과 달리 시행령에서는 교육·연구비 지급 대상을 교원으로만 한정해 교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정·회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회계법> 제28조에 따르면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세부 규정인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교육·연구비 지급의 대상을 교원으로만 축소했다. 때문에 국립대학 교직원들은 이 시행령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학교 교직원들은 ‘상위법에 따라 시행령에도 교육·연구비 지급대상에 교직원을 포함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태산 부산대학교지부장은 “공무원 노동조합, 대학노동조합, 조교 등 우리학교 교직원 약 400명의 의견을 취합해 교육부에 발송한 상태”라며 “교직원들과 의논해서 천막 농성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재정·회계법> 시행령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김유진 기자 yj13@pusan.ac.kr

전대신문 2015.4.13. 자.

교직원, '국립대학 회계법 교육부령' 반대 천막농성

지용준 기자 | february_ji@naver.com

승인 2015.04.13

우리 대학 교직원들이 일명 '국립대학 회계법 교육부령' 제정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지난 2일 본부 앞에서 시작했다.

오명근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은 “법 제정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연구비 지급대상을 교직원으로 합의했지만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한 교육부령에는 교수로만 한정돼 있다”며 “이는 국회 입법 취지와도 다르며 상위법에 반하는 시행령이다”고 지적했다.

또 “교수와 교직원으로 대학 구성원을 차별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교육부령에 반대한다”며 국공립대학교 교직원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와 법제처에 교육부령 재검토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학노조 그리고 조교 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천막농성은 교육부령 입법예고 기간인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대신문 2015. 4. 13. 자

신설된 ‘대학회계’ 교직원 임금 삭감 불가피

미완성 대학회계 ‘준예산 편성’으로 본교 운영, 상위법을 무시한 교육부령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문제 유발

이상봉, 최지은 기자 lsb14@knu.ac.kr, cje14@knu.ac.kr

기성회계 대체 법률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지난달 13일 공포·시행됐다. 또한 모든 국·공립 대학에 도입되는 ‘대학회계’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이하 국립대학 회계재정 규정)이 지난달 26일부터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국립대학 회계재정 규정은 4월 15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본교 재무과 전성우 재무과장은 “국립대학 회계재정 규정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라 본교도 그에 맞는 재정·회계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견수렴과정 중 국립대학 회계 규정이 변경된다면 본교의 규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설된 ‘대학회계’는 종전의 회계와는 달리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가 존재한다. 재정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국립대학 회계재정 규정이 만들어진 후 대학별로 회계·재정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이에 전성우 재무과장은 “우선 국립대학 회계재정 규정이 4월 15일이 지나야 공포되기 때문에 본교 재정·회계 규정이 확정되는 날을 생각하면 4월 말에 재정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본교는 아직 재정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바뀐 대학회계의 예산이 확정 및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재영(과학대 나노소재공학 14) 씨는 “예산 편성이 늦어진다면 학생행사의 경우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우 재무과장은 “현재 대학회계 규정이 정해진 것이 없어 예산집행이 늦춰질 것을 대비해 준예산(본래 명칭: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집행)을 편성하여 4월 2일자로 예산 지급을 완료했다”며 “작년 예산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두 달치(4, 5월)를 편성했고, 학과 행사가 많아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은 상황에 맞게 돈을 배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수·직원 처우는 악화돼

기성회계 폐지 이후 신설된 ‘대학회계’로 인해 교직원들의 처우가 크게 악화됐다.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바로 ‘급여보조성 경비’ 문제와 ‘기성회 직원의 퇴직금’ 관

런 문제이다. 급여보조성 경비는 기성회계에서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으로 교직원(교수, 직원) 모두에게 지급됐고, 국립대학 회계재정법 제28조 1항에서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 회계재정 규정 17조 1항에는 “국립대학의 장은 교원에게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교육연구비)을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상위법인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에는 교수와 직원 모두에게 교육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하위 교육부령인 국립대학 회계재정 규정에는 교수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본교 대학노조 박영란 지부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경우 이번 달부터 임금(연봉)이 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다”며 “실제 임금에서 손해를 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연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교수들도 임금 삭감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회계재정 규정 17조 2항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관련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비등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정하게 받아오던 교육연구비를 똑 같이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교원 교수(자연대 지질)는 “교육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교수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연구실적에 따라 봉급 개념에서 주던 교육연구비를 차등지급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성회계 직원들은 기성회계 폐지에 따라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 후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전성우 재무과장은 “4월 1일 자로 기성회 직원을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채용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불이익 없이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영란 지부장은 “지난달 31일 자로 기성회 직원의 퇴직금 정산이 끝났다”며 “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으면 금액이 더 많지만 이미 정산이 끝나버려 퇴직금에 대해서도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 대학교 신문 2016. 10.10. 자

[394호]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 대상에서 대학회계직원은 제외됐다

대학회계직원 분 2억 원 포함해 추경예산 제출했으나 총액서 30% 삭감 교육부 명령받고 학교 측이 재량 판단한 결과

지난해 3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이하 재정회계법)이 제정되며 (시행은 2016.1.1.) 신설된 항목인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의 지급대상에서 대학회계직원이 제외돼 구성원 간 갈등이 이어져오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으로 나뉘며 교원은 교수들, 직원은 공무원 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의미한다. 우리 학교 소속의 직원 역시 공무원 직원과 계약직, 즉 대학회계직원으로 구성돼있다.

대학회계직원은 또다시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과 수입대체경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동일한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한편 총무과, 교수지원과 등 관계부처는 대학회계직원의 재원이 다르다는 점과 대학회계직원 중 수입대체경비 기관을 재원으로 하는 직원을 대학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한다. 반면 대학회계직원 측은 대학

회계에서 수입대체경비 기관의 직원에게 교연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올해 2억 원의 대학 회계직원분의 교연비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됐음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이 항목을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재정회계법과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의미와 차이

재정회계법은 과거 국고회계(일반회계)와 비국고회계(기성회계)로 나뉘어 운영되던 국립 대학의 두 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한 법이다. 이 법의 제28조에 의해 기성회계 시절 실질적인 급여 성격으로 지급받던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폐지됐고, 새로운 회계인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 **급여보조성 인건비와 교연비는 아예 다른 항목이기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어느 교직원의 설명**도 있었으나 기본 봉급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두 비용은 종종 비교되어오곤 했다. 이번 연도의 교연비 예산을 책정할 때 직원들이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12년의 급여보조 수당을 기준으로 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지급됐던 급여보조성 인건비와 달리 교연비는 명칭대로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를 수행한 자에 한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작년엔 대학회계직원도 받았다

재정회계법은 3월 시행됐지만 이에 따른 교연비 제도는 작년 9월 이후 실시됐다. 그 결과 교연비의 1년 치 예산이 한 학기에만 쓰여 비교적 적은 예산이 집행됐고 그 금액을 대학본부, 즉 대학회계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작년의 교연비 지급대상은 공무원과 수입대체경비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 대학회계직원 모두였고, 그 결과 대학회계직원도 참여자에 한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연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모든 회계연도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의 예산집행 결과액의 범위 안에서 편성해야 하는데 그 결과 한 학기만 진행했던 작년 교연비 항목의 예산과 올해도 동일하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직원의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폐지되기 직전 연도인 2012년의 직원 분 급여보조 수당을 기준으로 해 올해의 교연비 예산이 조정됐다. 그러자 필요한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고, 수입대체기관인 사도교육원과 교육연구수원에서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 몫을 추가 확보했다. 그러나 목적성 경비인 수입대체경비는 그 기관의 본래 사업목적이 아닌 인건비로 예산이 지출될 수 없었고, 그 결과 수입대체경비 기관의 직원을 교연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 올해 추경에 대학회계직원 분 2억 승인됐으나 예산 총액서 30% 삭감 이유로 제외돼

위와 같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입대체경비 직원을 교연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는 정지됐다. 그러나 그 이후 열린 재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대학회계직원 분의 교연비 2억 원을 총장이 추경 승인’한 사실이 논의됐고, 해당 항목이 반영된 추경 예산안이 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이때의 2억 원은 수입대체경비가 아닌 대학회계 예산으로 확보된 금액이었다. 한편 교육부에 추경 예산안 승인을 요청한 결과 전체 예산의 30%를 삭감해 다시 제출하라는 답

이 왔고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대학회계직원 분의 교연비 2억 원’ 항목이 제외됐다.

총무과장은 “수입대체경비는 목적성 경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원들의 교연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대학회계의 예산으로도 수입대체직원에게 교연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대학회계직원이 교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의 사례에서 보듯 대학회계 예산에서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 모두에게 교연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본부는 직원 교육을 수입대체경비 기관의 직원과 공무원 직원의 구분 없이 대학회계 예산으로 함께 진행해오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하정근 직원 역시 “교연비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지급계획안은 대학에서 학교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수립하며 지급대상에 대학회계직원을 포함할지의 여부는 대학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교연비의 지급대상에 대학회계직원의 포함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자 “총무과는 학사지도비(교연비) 지급대상을 판단하는 부서에 1인당 몇 백이 되는 돈(교연비)을 우린 수입대체경비 직원에게 줄 수도 없고, 수입대체부서에서도 그 많은 돈을 충당할 수 없다”며 대학회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학회계 예산으로 교연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학회계 재원의 직원까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총무과장은 “수입대체경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과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은 모두 같은 곳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직원에게만 교연비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현장직의 참여자격 자체 판단해선 안 되며 총액 30% 삭감은 구성원 전체가 나눠져야 할 짐”

대학회계직원은 공무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사무행정직과 현장직으로 업무가 나뉘어있다. 다만 대학회계직원 중 현장직에는 조리종사원과 미화·경비원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과 같은 현장직원이 실질적으로 교육, 연구, 학생지도 항목에 맞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어떤 의견도 있었다. 실제 지난 1월 열린 제1차 재정위원회에선 위원인 모 교수가 “교연비 지급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대학회계직이 학생의 지도 또는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김은주 대학회계직협회장은 “학생지도 항목은 학생 생활에 플러스가 되도록 도우는 정도의 역할이지 전문성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조리종사원과 미화원에겐 교연비의 지급대상 자격을 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대학회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지도 항목의 예로 ▲본인 업무 시간 외에 다른 부서의 업무 지원 ▲학교 야간순찰 ▲꼬나꼬나 행사 지원 ▲졸업식·입학식·교육축전 등 행사의 교통 지원 ▲응급처치 수업 시 도우미 활동 ▲교육실습생·실습학교 지원 등을 들었다.

이어 “현장직과 사무직, 대학회계직원과 공무원 구분 없이 참여자격은 똑같이 부여하고 그 중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판단해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지 참여자격 자체를 총무과에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총액 예산의 30%가 삭감돼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교직원에게서 30%를 감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우리학교의 약자인 대학회계직원 분의 교연비를 제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하주현 기자

disney006@naver.com

국립대학법의 제정

현재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시행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0호, 2016. 6. 28., 일부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을 일정한 사단법인의 실질을 가진 존재로 보고, 다른 한편으로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로 본다면 대학에 관한 규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립대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명령과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관계를 어느 정도 예정하는 규범형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 국가와 국립대학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국립대학의 운영원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단순한 영조물 혹은 영조물 법인이 아니라, 자치행정권을 갖는 법률상의 독립적 주체(공법상 사단)로 설정할 필요, 즉 대학은 공법상의 법인이고, 동시에 국가기관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대학재정의 공적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률조항도 필요하고 학문자유와 대학자치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둬야 한다.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서 ‘국립대학법’이 필요하다.

대학정책 시행의 형식: 행정명령 형식의 남용 시정 필요성

대학에 관한 국가의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은 우선 정책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설정한 목적의 달성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정책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책으로서의 안정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대 총장의 직선제 폐지는 기존의 법령에서도 유일한 방안이 아니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사실상 강제하였고, 동일한 법령 아래서 직선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법령해석과 정책방향이 무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경우도 각 대학마다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원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어 업무효율성에 문제를 낳고 있다. 대학의 규모나 운영의 내용 등에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점을 무시하고 각 대학에 통일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그 정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적절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그러한 정책의 실시가 국회에 의한 통제가 거의 없이 교육부만의 판단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점도 있다. 대학에 관한 정책이 시행될 때 교육부가 정책실시의 형식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등 행정명령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법률유보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은 교육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현재 1992.10.1. 92헌마 68 등.)이면서 한편으로는 대학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의 실질을 가진다. 독일 대학판결에서는 대학을 “자치적 사단과 국가적 영조물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대학이 법인인지와 상관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가 된다(“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는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한다 하더라도 대학자치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으며, 다른 내용에 대한 제한도 대통령령이나 교육부장관령과 같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입법에 의한 ‘법률’의 형식에 의한 제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의 장 임명을 위한 임용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해당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 내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여 완전히 무력화된 경험이 있다. 즉,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였는지에 따라 사업 선정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배점을 한 경우가 있다. 이는 교육부가 정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침’만 수정한 경우로서, 그것이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제한이 아니라 수혜의 모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도로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학의 회계와 학사 업무 등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은 교육부훈령(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 1. 17.] [교육부훈령 제241호, 2018. 1. 17., 제정])에 의하여 이뤄졌다. 국립대학이 단지 국가기관 또는 영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의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의 변경은 때로는 대학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그 추진이나 도입이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가 코러스 도입의 근거로 재정회계법, 교육기본법, 전자정부법 관련조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코러스가 재정회계 업무 이외에 산학협력, 교육과 연구 등 업무까지 관할하고 이들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성과급적 연봉제나 학장 임명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통령령에 의해서였다.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교육부 자체에 의하여 동원 가능한 규범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2017. 7. 7.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목차

-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
- 「국립대학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 역사
- 「국립대학법」의 기본 개요
- 「국립대학법」의 주요 내용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

○ 헌법과 법률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부재
- ▶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부재
- ▶ 심지어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문화시키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음, 예를 들면 국립대학의 설치근거는 대통령령(국립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등)으로 규정되어 교수 등 대학 구성원이 대학자치에서 배제되고 있음

○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정책 특히 선진화 정책의 폐해를 해결할 필요성

- ▶ 교육부는 1995년 이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받아들이면서 국가와 대학의 관계는 상하관계,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재편
- ▶ 이런 정책으로 학문자유와 대학자치가 위기에 빠졌고, 법인화정책과 선진화정책으로 국립대학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고 국립대학이 내적으로 무너졌는데, 이를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헌법에 따라 국가와 국립대학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국립대학의 운영원리를 규정할 필요

-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단순한 영조물 혹은 영조물 법인이 아니라, 자치행정권을 갖는 법률상의 독립적 주체(공법상 사단)로 설정할 필요, 즉 대학은 공법상의 법인이고, 동시에 국가기관임을 규정
- ▶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대학재정의 공적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률조항이 필요
- ▶ 학문자유와 대학자치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

○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 ▶ 「고등교육법」이나 「국립학교 설치령」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대학자치가 침해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국가와 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의사결정권을 총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대학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 교수회·직원회·학생회 등 대학자치조직을 법제화하고, 대학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 우리나라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상생적인 미래를 위해서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개편하고 대학입시의 혁신을 위해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

- ▶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공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공립대 연합체제(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를 구성
- ▶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유형별로 학생 선발을 단순화·표준화·공정화하고, 커리큘럼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의 필요

- ▶ 현재 고등교육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 회계법」 등 여러 법률이 난립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이 부재, 따라서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서 「국립대학법」을 입법할 필요

□ 「국립대학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 역사

○ 2016년

- ▶ 4월 29일: 국교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국립대학법 입안을 위한 정책포럼 결정, 구체 사안은 정책위원회에 일임
- ▶ 7월 12일: <고등교육법체계 확립을 위한 「대학법」 제정을 제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국회에서 교문위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교육부와 야당(더민주당, 국민의 당)에 대해서 국립대학법 필요성 설명하고 공유함
- ▶ 10월 20일: 대학정책학회 창립심포 주제발표(임재홍, 대학정책 결정구조의 전환) 등에서 국립대학법 입법 필요성 강조
- ▶ 12월 1일: 제1차 정책 포럼 국립대학자치와 국립대학법(안)(방송대)
- ▶ 12월 23일: 제2차 정책 포럼 국립대학제정과 국립대학법(안)(충남대)

○ 2017년

- ▶ 1월 13일: 제3차 정책포럼 대학회계, 국립대연합체제와 국립대학법(안)(방송대)
- ▶ 2월 3일: 제4차 정책 포럼 국립대학 총장선출, 국립대학운영원리와 국립대학법(안)(방송대)
- ▶ 2월 13일: 국교련 임시총회(제주)에서 정책포럼 진행 사항 보고
- ▶ 3월 10일: 국교련 임시총회(전남대)에서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설치 결정**
- ▶ 4월 7일: ‘제1차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개최
- ▶ 4월 19일: ‘제2차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개최
- ▶ 4월 29일: ‘제3차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개최
- ▶ 5월 12일: ‘제4차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개최(초안 확정)
- ▶ 6월 5일: 국교련 집행부 회원교에 ‘국립대학법 기초법안 준비를 위한 의견수렴’ 요청하여 6월 16일 마감함(13개 회원교에서 의견을 제출함)
- ▶ 6월 20일: ‘제5차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개최
- ▶ 6월 22일: 국교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국립대학법안 및 의견수렴 보고하고 향후 일정 보고

○ 향후 일정

- ▶ 7-8월 권역별 토론회: 교수회집행부 + 권역별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내부적인 입장 정리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계기로 활용, 최소 3회(예: 서울-부산-광주)로 개최 예정
- ▶ 9월중 토론회: 권역별 국립대학 교수를 상대로 한 설명회, 최소 3회(예: 대전-대구-전주)로 기획
- ▶ 국회 공청회

□ 「국립대학법」의 기본 개요

○ 국립대학법안의 구성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국립대학의 권리와 책임[제6조~제11조]

제3장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과 운영기구[제12조~제36조]

제1절 대학자치조직과 대학평의회

제2절 총장

제3절 대학조직

제4장 국립대학의 재정과 회계[제37조~제65조]

제1절 재정과 회계의 원칙

제2절 재정위원회

제3절 대학회계

제4절 국립대학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5장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와 국립대학평가원[제66조~제86조]

제1절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

제2절 국립대학평가원

제6장 국립대학 대학평의회연합회와 국립대학 간 업무협조[제87조~제89조]

제7장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기준[제90조~제91조]

제8장 공립대학 적용의 특례[제92조~제93조]

부칙[제1조~제4조]

□ 「국립대학법」의 주요 내용

○ 국립대학법 입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이중적으로 규정

제4조(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학사·연구·재정 등 대학운영에 관하여 독립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학문자유와 대학자치의 보장 규정

제6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국립대학에서 다음 각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보장된다.

1. 연구의 자유와 그 결과를 공표할 자유
2. 교수의 자유
3. 의견 표현과 학습의 자유
4.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제7조(대학의 자치) ① 국립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② 국립대학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치권을 갖는다.

1. 대학에서의 의사결정
2. 학칙의 제정 등 학사운영
3. 대학의 인사
4. 대학재정의 편성과 운영
5. 대학시설의 관리와 운영
6. 이외에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

③ 국립대학의 구성원은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대학구성원의 권리 보장 규정

제9조(대학구성원의 권리) ① 국립대학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35조의 권리와 자유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 ②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동의 없이 학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③ 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 활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④ 대학구성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명시**

제11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① 국립대학은 양질의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성별이나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은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선발과 교육, 장학 등의 계획 및 결과를 시행령에 따라 매년 국회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자치기구의 법적 지위 보장 규정**

제12조(대학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① 대학구성원은 대학의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학구성원은 교수회·학생회·강사회·조교회·직원회 등 자치조직을 구성할 자유를 갖는다.
③ 자치조직의 종류와 명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회 등의 지위와 권한 등 규정**

제13조(대학평의회 등의 지위) 국립대학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대학평의회를 둔다.
제14조(대학평의회 등의 권한) ① 대학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총장후보자의 선출방식 결정
4. 총장 해임의 건의
5. 학칙으로 정하는 주요 보직자의 임명동의와 해임 결정
6. 대학 조직의 설치, 폐지와 변경
7.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
8. 대학의 예산안의 확정 및 결산 심사
9. 그 밖에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5조(대학평의회 등의 구성) ① 대학평의회는 교수·학생·직원 등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평의회 등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집행기구로서 총장의 지위와 권한 등 규정**

제16조(총장의 지위) ① 총장은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중임을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한다.
제17조(총장의 권한) ① 총장은 법령과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권한과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

다.

-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부총장 등 보좌기관, 대학원과 단과대학의 장, 부속시설이나 하부조직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대학평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 ④ 총장은 학칙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대학평의회의 의결에 대한 총장의 거부권) ① 대학평의회가 제1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평의회 의장은 의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 사항을 그 총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총장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총장은 제1항의 의결 사항이 이송되면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③ 의결 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총장은 위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대학평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학평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 ⑤ 총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⑥ 총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총장이 확정 후 5일 이내에 의결 사항을 공포하지 아니하면 대학평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총장이 의결 사항을 공포한 때에는 즉시 대학평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대학평의회의 의장이 의결 사항을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의결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총장후보자의 선출) 총장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0조(총장의 임용) ① 총장은 해당 국립대학 대학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임용하거나 국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국립대학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국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총장을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출과 대학 지원 연계 금지)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을 정하거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또는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립대학의 자율과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재정과 회계

제37조(국가의 재정책임)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립대학의 유형, 국립대학들 사이의 형평성, 경제발전협력기구 회원국가의 고등교육

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대학생 1인당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재정교부의 기준과 방식,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회계의 구분) ① 국립대학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로 구분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하는 대학회계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회계
 - 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기금회계
 -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회계
 - 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
 -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대학의 회계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대학의 회계연도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④ 국립대학의 총장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종합재무제표 및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에 재정위원회를 둔다.

-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대학평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 ③ 재정위원회 위원의 4분의 1(다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대학평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제3항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대학평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1. 해당 대학의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에서 추천한 교원·직원 및 재학생
 -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재정위원회의 권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1.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 2.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 3.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 ②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45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국립대학 회계의 예산 및 결산
 - 2.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

3.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6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가와 국립대학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재정·회계 자율의 보장

2.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3.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4.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5. 재정건전성의 확보

6. 건전하고 투명한 예·결산의 운영

○ 국립대학 사이의 협의체 설치 및 자율결정

제66조(국립대학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국립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협의회의 회원은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제67조(국립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 ① 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국립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협의

2. 국립대학의 기관인증평가

3. 국립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국립대학의 기초학문육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법 개선의 협의

5.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그 밖에 국립대학 간 협조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교육협의회는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수준의 상향표준화를 통한 대학서열의 해소와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신입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상호협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기관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협의회에 국립대학평가원을 둔다.

④ 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립대학의 평가

제85조(국립대학평가원의 설치) ① 교육협의회에 국립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교육협의회로부터 독립된다.

② 평가원은 이 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6조(국립대학평가원의 구성) ① 평가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2. 교육협의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4인

3. 국립대학 대학평의회 연합회가 추천하는 5인

② 평가원의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선결조건

제87조(국립대학 대학평의회연합회) ① 국립대학 대학평의회는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를 설립한 경우 그 연합회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합회는 국립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합회는 국립대학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8조(국립대학 간의 협력) 국립대학은 다른 국립대학으로부터 입시나 입학, 학사 등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공동처리에 관한 협의·조정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 국립대학 교육여건 개선 - 국립대학법 중 설립 운영 기준 강화에 반영

제91조(국립대학 교원 확보기준의 특례 등) ① 국립대학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1인당 학생수(학부 기준) 20인의 범위 안에서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유형별로 계열별 최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 20명
2. 자연과학 15명
3. 공학 15명
4. 예·체능 15명
5. 의학 5명

② 원격대학의 설립과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대응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재 제안된 방안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있다. 독립제 관청인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안정성과 계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2019. 3. 25.)의 경우, ‘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이나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시·도교육감 등이 요청하는 자문에 관한 사항’(법률안 제12조 제1항) 등 초·중등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문제의 핵심 가

운데 하나인 대학의 자율성 회복이나 교육부에 의하여 초래되는 고등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나 매우 좁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초·중등교원단체의 위원 추천권을 인정하는 데 반하여 대학교원 또는 교원단체의 위원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총장들이 참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만 추천권을 인정(법률안 제3조 제3항 제6호)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대학지배나 대학의 상업화 등 기류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안에 명시된 위원회의 사무 범위(제2조 제1항)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교육정책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거나 문제점을 적시하고 시정을 구하는 일조차도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불여지가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정책의 일관된 안정적 추진이라는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문제 시정을 위한 견제적 기능의 수행 없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의의를 갖지 못할 수 있다. 최근 대학에 겪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강요나 초·중등교육에서의 기초학력 관련 정책의 문제 등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어야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추진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며, 위원회의 사무 범위에 ‘교육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의견의 표명, 조언과 권고’를 포함하여 교육정책의 집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1대 국회의 구성과 함께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모두 폐기되었지만, 기존의 법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사항 4. 국교조 경과 보고

- 남중응(한국교통대, 국교련 정책위원)

「모든 대학교수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경과보고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노동조합

[경과보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 2019년 3월 29일(전북대) : 제6차 국교련 정책위원회
국립대학 현안문제와 대응 방안(교수노조 관련 최초 논의)
- 2019년 4월 8일 : 교수노조대응 소위원회 구성
- 2019년 4월 23일(공법학회 사무실 / 대우빌딩) : 제7차 정책위원회
(교수노조 설립과 노동법적 쟁점, 국교련 대응방안)
- 2019년 5월 10일(방송대) : 제8차 정책위원회
교원노조법 개정의 쟁점들(특히 제안된 개정안에 관하여)
- 2019년 5월 31일(한밭대) : 제9차 정책위원회 -교수노조 설립 추진 일정 등 구성
- 2019년 7월 26일(교원대) : 제10차 정책위원회 -교수노조 설립 당위성 구성
- 2019년 8월 30일(부산대) : 제11차 정책위원회, 제21대 국교련 정기총회
(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추진위장에
교수노조대응 소위원장 남중웅 교통대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
- 2019년 9월 27일(안동대) : 제22대 국교련 1차회의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2019년 10월 25일(교통대) : 제22대 국교련 2차회의 -국교조창립결의
- 2019년 10월 25일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창립총회 개최
위원장 남중웅(교통대), 수석부위원장 백승철(경상대), 부위원장 강종수(강원대),
김성환(군산대), 문윤섭(교원대), 소은선(전북대), 최인철(경북대),
감사 오호택(환경대), 박노진(금오공대) 선출
- 2019년 11월 11일 : 국교조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정책위원장 권오현(경상대), 자문위원장 이형철(경북대), 사무총장 유정호(교통대) 선임
- 2019년 11월 29일 : 국교조 제1차 간담회 개최
- 2020년 1월 9일(제주대) : 국교조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2020년 2월 3~4일(경상대) : 중앙집행위원 워크숍 개최
- 2020년 2월 10일 : 경북대 지회 설립총회 개최(지회장 채형복 교수 선출)
- 2020년 2월 18일 : 교통대 지회 설립총회 개최(지회장 유정호 교수 선출)
- 2020년 3월 2일 : 서울대 교수조합(교수노조) 간담회

- 2020년 3월 24일 : 민노총전국교수노조(전교노) 박정원 위원장과 국교조위원장 교류회
- 2020년 3월 27일 : 고용노동부 관계자, 사교조 관계자, 국교조와 간담회
- 2020년 3월 27일 : 제1차 국공립대 연석회의(노조할권리 쟁취와 사안별 공동대응을 위한)
국교조, 조교노조, 한국노총 /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회의실
- 2020년 4월 1일 : ‘교수노동조합 합법화 원년 선포’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앞,
국교조, 전교노, 민노총, 전교조 등
- 2020년 4월 1일 : ‘국교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접수, 고용노동부
- 2020년 4월 8일 : ‘교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2020.4.6)’
- 2020년 4월 17일 : 제2차 국공립대 연석회의(노조할권리 쟁취와 사안별 공동대응을 위한)
국교조, 조교노조, 한국노총 / 한국노총 회의실(여의도)
- 2020년 4월 29일 : ‘130주년 노동절 맞이’ 국공립대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내용 중 ‘경북대 폭발사고’ 내용 포함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배경범 위원장,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김상수 위원장, 국교조위원장 및 임원 등
- 2020년 5월 6일 : ‘국교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 접수, 고용노동부
- 2020년 5월 8일 : ‘국회 환노위’ 양당 간사(임이자 의원, 한정애 의원)와 국교조 간담회,
임이자 의원실, ‘교원노조법제2조’ 개정 관련, 국교조위원장 및 임원
- 합의안 : 5월 11일 환노위 소위원회 개최 후 환노위 상임위원회 개최, 교원노조법제2조
개정 위원회 부의 및 개정 추진, 20대국회 회기내 본회의 법개정 추진 협의
- 2020년 5월 8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광화문 경사노위 7층 중회의실,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 「국공립대위원회」 구성 협의
- 2020년 5월 12일 :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개최 후 환노위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
설훈 의원안 + 환노위 위원장 「대안」(교섭창구단일화 수정안)
- 2020년 5월 12일 : 지회운영비 지급(경북대, 교통대)
- 2020년 5월 14일 : 경상대학교 지회 설립총회 개최
- 2020년 5월 19일 : ‘사교련’ 공동기자회견, 국회 소통관(박용진의원, 사교조, 국교조)
- 2020년 5월 20일 :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 예정)

「국공립대학 교수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로인해 촉발된 헤이마켓 사건을 통해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매년 5월 1일(MAY DAY),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거리로 나선다.

130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2020년 대한민국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국가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원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노조 할 권리 자체가 없다. 대학교수의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을 위한 ILO기본협약 국회 비준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국공립대학 공공성을 강화하라!’

대학은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지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호약탈식 ‘고등교육정책’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학을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수들의 노동조건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의 연구성과로 연봉 줄세우기, 취업중심의 대학 운영, 비인기학과의 무차별적 통폐합 등과 같은 기업적 마인드는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교육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국공립대학 교수는 공무원, 교수에 앞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다. 따라서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사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및 교육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공립대학 교수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구이자 국공립대학의 공공성 유지·강화의 시작점이다.

‘국공립대학 교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절 130주년이 되는 올해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수노동자는 즉각적인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공립대학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이 유일하게 교육공무원인 교수노동자에게만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선배교수님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투쟁의 결과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한 합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학 교수노동자의 법내노조 설립의 길이 열렸으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 20대 국회 막바지에 교원노조법제2조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국교조’는 지난 4월 1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고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선포하였다. 이제 국공립대학 교수노동자는 정당한 노조 할 권리 쟁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국교조’는 교육부 등과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 교원의 권리를 확보하고,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는 경쟁이 목표가 아니라 상호부조하며 지혜를 모아 서로 도와야 한다.” 따라서 ‘국교련’의 41개 대학이 연대하는 ‘국교조’는, 무소불위한 고등교육 권력의 유일한 견제세력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이다.

하나.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국공립대학 교수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입법공백³⁾ 기간 중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매뉴얼을 확립하여 국공립대학 교수노조의 노조 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공립대학 교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교조’와의 교섭에 직접 나서라!

2020년 5월 22일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 및 관계자들의 큰 역할에 존경의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0. 5.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 및 회부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경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2018.9.13.	제364회 국회(임시회) 제11차 환경 노동위원회(2018.11.22.)에 상정 후 고용노동소위원회 회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 훈	2019.11.5.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 노동위원회(2019.11.07.)에 상정 후 고용노동소위원회 회부

나.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2020.05.11.)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0.05.11.)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원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을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1항), 교섭의 효율성을 위하여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 제 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원은 특별시·광역시.”을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시·도 교육감”을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특별시·광역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으로,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를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시·도 교육감,”을 각각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 설>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

② (생략)

③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다),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신 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⑧ (현행 제4항과 같음)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
-----.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현행 과 같음)

②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색 지

색 지

논의사항 1. 국립대학 교원보수체계 정상화 방안

- 김대중(충북대, 국교련 정책위원)

국립대학교 교원보수체계 정상화 방안

(1) 법률적 검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1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

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 8.>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상여수당 <개정 1993. 12. 31.>

제5조 삭제 <1993. 12. 31.>

제5조의2 삭제 <1991. 12. 31.>

제6조 삭제 <2006. 1. 12.>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 6.>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3 삭제 <1992. 12. 31.>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7., 2017. 1. 6.>

$$\text{지급금액} = \text{제1항의 정근수당액} \times \frac{\text{실제 근무한 기간(개월)}}{6(\text{개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並用)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8.>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 1. 8.>

⑧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8.>

⑩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 12., 2016. 1. 8.>

⑪ 제10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 12., 2016. 1.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8.]

제8조 삭제 <2001. 1. 4.>

제9조 삭제 <2001. 1. 4.>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 7. 26., 2017. 1. 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8. 9. 18., 2018. 12. 3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8.,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2010. 5. 4.>
 -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7.>
 -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1. 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2010. 1. 7.>
 -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1. 7.>
 -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9., 2017. 1. 6.>

② 제1항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 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제5항·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8. 7. 3., 2019. 1. 8.>

1. 삭제 <2018. 7. 3.>
2. 삭제 <2018. 7. 3.>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20. 1. 7.>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18. 1. 18., 2020. 1. 7.>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5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5}{\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12.>

⑦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2., 2017. 9. 5.>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 12.>

[전문개정 2011. 1. 10.]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6. 11. 29.>

② 제1항의 경우에 향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 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개정 2005. 2. 25.>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4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10.>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text{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 근무 시간}}{40\text{시간}}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전문개정 2016. 1. 8.]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18.>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18. 1. 18., 2019. 1. 8., 2020. 1. 7.>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2. 8. 22., 2017. 1. 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 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3. 1. 9.]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2. 8. 22.]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9.>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9., 2017. 1. 6.>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장의2 실비변상 등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지사, 병역판정검사전담지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제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2 삭제 <2011. 1. 10.>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4 삭제 <2011. 1. 10.>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2015. 1. 12., 2016. 1. 8., 2020. 3. 10.>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조사·병역판정검사전담조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2017. 1. 6.,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11. 1. 10.>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다목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1. 7., 2019. 1. 8.>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0. 7. 26., 2010. 10. 18., 2013. 3. 23., 2013. 12. 11., 2014. 1. 8., 2014. 7. 16., 2017. 1. 6., 2017. 7. 26., 2019. 1. 8., 2020. 3. 10.>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6. 삭제 <2010. 1. 7.>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의 1)(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직위 등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1)의 나)(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11.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9)(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
 1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7)(「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3. 별표 11 제3호라목의 2)(「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14. 별표 11 제3호바목의 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수당
 -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 나. 별표 11 제3호바목의 11)의 가)[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수당
 15.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아목[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수당
 16. 별표 11의 각 수당[같은 표 제3호라목2)(「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3호자목(전문직무급)의 수당
-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3)란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할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 3. 31., 2010. 1. 7., 2010. 7. 26., 2014. 1. 8., 2017. 1. 6., 2018. 1. 18.>
-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

고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7. 1. 6., 2020. 1.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2020. 1. 7.>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⑧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⑨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 7.>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0.>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게는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신설 2017. 1. 6.,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 8. 29.>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 8.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1. 8. 29.]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1. 10., 2011. 7. 4.,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5. 1. 12., 2020. 1. 7.,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3. 12. 11., 2013. 12. 16.]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0. 9. 10.]

[제목개정 2013. 12. 11.]

제23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 10.,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영을 시·도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항, 제15조제5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 및 별표 2의4의 비고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도지사"로 본다.
2. 제7조의2제10항, 제10조제6항·제10항, 제11조의3제7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본다.
3. 제7조의2제5항 본문 중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제11조제3항 전단 중 "소속 기관장" 및 같은 항 후단 중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각각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10.]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 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4.]

부칙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연구수당과 교직수당 법률 체계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2항의 대통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 수당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관련)

가. 연구업무 수당 지급 기준

- 1)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25,000원
 - 나) 5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15,000원 이하
 - 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10,000원 이하
- 2) 장학관·교육연구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원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 가) 지급액
 - (1) 장학관·교육연구원
 - (가) 5년 이상: 월 22,000원
 - (나) 5년 미만: 월 37,000원

(3) 연구직 공무원

가)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나) 가산금: 3급 상당 지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가) 지급액: 원장은 110,000원, 교수·부교수·조교수는 110,000원, 부장 100,000원, 장학관·교육연구원·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는 80,000원

다. 교직수당 지급 기준

1)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월 250,000원(기본 교직수당) 지급

다만 다음 가산금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2) 교직수당 가산금(중복 지급 가능)

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에 매달 1인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월 50,000원 가산금 지급

나)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는 월 70,000원 가산금 지급

다) 고등학교 이하 특수학교, 유치원, 국악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사는 월 30,000원~70,000원 가산금 지급

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담임)은 월 130,000원 가산금 지급

마) 실과과목 교원에게는 월 25,000원~월 50,000원 가산금 지급

바) 고등학교 이하의 보건교사는 월 30,000원 가산금 지급

사) 겸임교장과 겸임교감은 월 50,000원~월 100,000원 가산금 지급

아) 영양교사는 월 30,000원, 사서교사는 월 20,000원, 상담교사는 월 20,000원의 가산금 지급

국립대학교 교원 연구 및 교직수당 조정 요구서

1 요구내용

(가) 국립대학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 제35조 제3호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직급	연구수당	교직수당
조교수	45만원	45만원
부교수	50만원	50만원
정교수	60만원	60만원

(나) 과거의 기성회 인건비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교연비)이 과세 대상 소득임에도 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기여금의 소급납부 방법을 통하여 손실된 연금의 구제를 요구함.

(다) 재정회계법에 맞게 교연비의 예산을 줄이고 사업비로 운영해야 함.

2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국립대학 교원 (00명)	000천원	· 정교수: 00명 × 00천원 × 12월 = 00천원 · 부교수: 00명 × 00천원 × 12월 = 00천원 · 조교수: 00명 × 00천원 × 12월 = 00천원	00%

3 필요성

(가) 연구수당과 교직수당 미지급: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 위반

- 「교육공무원법」 제34조는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에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

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교원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교원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교원들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초중등 교원의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은 이미 지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담임수당, 부장수당, 수석교사수당 등 다양한 직책관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202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84호 2020. 1. 22.)의 “<표 1>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에 따라서 계산한 국립대학교원의 연봉은 같은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봉보다 (2017년 화폐가치 기준) 연평균 2,160만원 적음.

<표 1> 상당직급(5급~2급)의 일반직 공무원 연봉 대비 국립대 교원의 연봉 수준
(2017년 화폐가치 기준, 단위: 만원)

급여항목	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	봉급계	직급조비	관업무수당	수당계	총합계 (봉급+수당+합)	연금손실	
										연	월
직급											
조교수(4년)	-587	-49	-59	-112	-807	-300		-300	-1,107	-1,222	-102
부교수(6년)	-735	-61	-74	-189	-1,059	-480	-465	-945	-2,004	-1,243	-104
교수(3급,10년)	-826	-69	-83	-254	-1,231	-600	-599	-1,199	-2,430	-1,372	-114
교수(2급,7년)	-643	-54	-64	-288	-1,049	-780	-643	-1,423	-2,472	-1,560	-130

* 연봉의 비교는 34세-60세까지의 비교임.

* 연금 손실의 경우 2017년 각 직급별 중간값 기준으로 65세 퇴직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음.

- 대부분의 대학에서 미지급봉급과 수당을 대신하여, 대학의 자체수입금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교연비)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교연비의 집행은 재정회계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 교원의 급여는 상당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에 비하여 13.7%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급되는 교연비 총액은 이 차액에 미치지 못함.
-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상 입법의무를 위반한 것임.

- 「교육공무원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립대 교원에 대한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직급별로 차등하여 적절하게 지급하여야 함. 국립대학 교원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호봉제에서 존재하던 직급별 차등성이 사라졌으며, 직급 승급으로 인한 급여 인상도 차등성 없는 단일 급여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초중등교원은 이미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에도 국립대학 교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교원은 조교수에서 정교수까지 근무연수에 따라서는 5급에서 2급 또는 3급의 상당하는 호봉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수당에 있어서는 이를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교연비)의 문제점: 대학교원은 미지급된 봉급과 수당을 대신하여 그보다 수백만원 적은 교연비를 받고 있으나 행정공무원은 봉급과 수당을 다 받고 교연비도 받고 있으므로 불평등한 제도이며, 교연비는 기성회 인건비의 대체이므로 인건비인데 이를 사업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학에서는 많은 갈등만 유발하고 있음.

(다) 막대한 연금 손실

-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연비는 같은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와의 차액보다 적고, 교연비가 과세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금과는 관련이 없어서 국립대 교원의 연금에 막대한 손실이 있음. 국립대학교 교원의 연금 손실액은 32년 근무 기준으로 조교수: 월 -102만원, 부교수: 월 -104만원, 교수(3급): 월 -114만원, 교수(2급): 월 -130만원임.

- 현재 임용 평균 나이인 41세에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최대 25년 근무)는 상당 직급 일반공무원 대비 연봉이 연평균 2,700만원 적고, 32년 근무교원 대비 연금도 20%이상 적음. (현재 신입교원의 연금은 월 150만원 ~ 300만원으로 평균 월 250만원 이하로 예상됨)

- (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위반: [2020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국공립대학교의 조교수는 일반직 5급, 부교수는 일반직 4급, 정교수는 일반직 3급과 2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아야 하나, 대학교원은 같은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13.7% 적은 봉급을 받고 있음.

4 예산의 조정

- (가) 요구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학예산 중 국가지원금 인건비의 증액으로 충당하고, 증액된 인건비는 국가지원금의 정상적 경비와 시설확충비의 감액으로 맞춤.
- (나) (가)항의 감액된 예산만큼 대학예산 중 자체수입금의 정상적 경비와 시설확충비의 증액으로 보존함.
- (다) (나)항의 자체수입금의 정상적 경비와 시설확충비의 증액만큼 자체수입금의 교연비의 감액으로 맞춤.

국교련 대응

- (가) 수당 조정 신청서 제출 (교육부) → 인사혁신처와 협의
- (나) 국교조와 교육부/인사혁신처 등과 단체협약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적용철폐를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초중등 교원은 입법화가 되어 있으나, 대학 교원은 일체의 수당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상태로서 협의나 요구가 없었음.
- (다) 수당조정 요구절차는 매년 교육부(인사혁신처)를 통하여 2~3월경 공문시행함(수당조정위원회-차관 주재)

담당부서: 교육부 운영지원과, 국립대학정책과

논의사항 2. 국립대 총장선거권에서의 직원 등 투표 반영비율 협상 - 김두진(부경대, 교수회장)

I. 서론

부경대학교는 금년 6월 17일에 제7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금년 4월 1일 부경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고, 지난 4월 28일에 추천위원회는 관할 부산광역시 남구선관위와 총장선거 위탁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5월 13일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직원등 투표산정비율 합의 T/F에 직원등 투표산정비율을 합의하여 오도록 위임하여 합의결과를 승인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는 등 총장선거 절차가 목하 진행중에 있다.

이 글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6월 17일의 부경대 총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거와 관련한 절차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직원·조교·학생(이하 직원등)의 투표비율을 논의하기 위한 합의 T/F를 구성하여 협상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이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관하여 사전에 조사하면서 대학자치와 법치주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다.

II. 국립대 총장 및 학장의 임용

1. 국립대 총장의 임용방법

국립대 총장의 임용방법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1항에서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는데(동조제2항),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또는 ②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따라서 국립대 총장선거는 해당 대학 교원이 총장후보자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기로 선택하여 총장선정규정과 같은 학칙으로 정하였다면 치러질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때인 2005년 5월 31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서부터 인정되어 온 것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학문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제22조 제1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대학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제31조 제4항). 따라서 대학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총장후보자의 직선은 해당 대학구성원들이 특별한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와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는 대학총장의 직선을 허용하지 않았다. 2015년 부산대 고현철 국문학과 교수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여 “직선총장제의 사수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부산대는 그 뜻을 기려서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바 있다.⁴⁾

선거의 방식을 채택하였는지 아니면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국립대학은 법 제 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총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대학 총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4) 한겨레신문, 김광수 기자 “학생 투표 빠진 부산대 총장 선거…1위는 차정인 교수”, 한겨레신문 2020.2.5.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결국 추천된 2인의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교육부는 적격심사를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 제16호)를 거쳐 대통령이 그 중 한 사람을 임명하는 구조이다.

종래 2순위로 추천된 총장임용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제청 거부와 이에 대한 쟁송 제기로 대학의 총장 공석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등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한 대학 내 갈등과 혼란이 심각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⁵⁾

이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초대 교육부총리였던 김상곤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이 2명 이상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정 하여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교육부의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권 행사를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그간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던 방식을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선 순위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제청하도록 하고, 대학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시, 이후 진행되는 교육부 심의 결과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2순위자가 ‘적격’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여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위로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임명한 예가 경북대 총장선거의 경우에서처럼 박근혜 정부때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인 지난해 2월과 7월의 한국해양대 총장선거의 경우에서처럼 가끔 있다. 이 경우 선거로 표출된 해당 대학구성원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대학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1위자에게 총장으로 임명하기에 부적격한 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대학의 총장추천위에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구성원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1위로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대학자치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 국립대 단과대학장의 임용방법

반면 국공립대 단과대학장에 관해서는 1960년대 이래 교육공무원법상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므로 단과대학장을 선거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선거제는 아니더라도 해당 단대 소속 교원들의 선호도조사의 방식으로 학장 후보자를 교수회에서 선출한 후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은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학장을 임용하여 왔다.⁶⁾

그러나 2011년 2월 1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서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문구가 삽입됨으로써 종래의 단과대학장 선출 관행을 금지하였다.

5) 교육부 보도자료,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에 대학 자율권 확대-장기 공석 대학에 대해, 기존 후보자 재심의를 대학 의사 확인을 통한 조속한 공석 해소 추진 계획 밝혀-”, 2017.8.30.

6) 주요국공립대 학장선임제 현황(2013.4.18.).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대학	학장 임용 방식
경북대	단과대학 교수회 내규로 단대 교수회가 의견수렴 후 후보 2인을 특정하면 총장이 이를 참작하여 학장을 임용.
경상대	단대 전체 교수들이 모여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대로 총장이 임명.
공주대	여론조사 또는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교수회 추천 4명, 본부 2명, 총장 추천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 학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학장응모자를 서류심사·면접심사한 후, 후보 3명을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면 총장이 결정하여 임용(공주대학교 학장공모심사위원회운영지침).
부경대	단대학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자천을 받아서 단대교수들의 후보자 선호도조사를 거쳐서 단대학장선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순위를 매겨 대학본부에 추천하면 전임총장과 총장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임용.
서울시립대	직선제를 유지하고, 교수회 규정 제21조에 따라 학장 선출. 제21조(학장의 임명건의) ① 학장의 임명건의를 위한 단과대학 교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단, 특정 학과의 구성원이 재적회원의 과반수일 때는 재적회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② 학장 임명건의 후보자(이하 학장 후보자'라 한다)의 입후보는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추천으로 한다. ③ 전항의 입후보자는 투표일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④ 학장 후보자는 직접·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받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전항에 의한 투표에는 인문대학은 교육대학원, 공과대학은 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 정경대학은 세무전문대학원, 예술체육대학은 디자인전문대학원, 도시과학대학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전임교원을 포함한다. ⑥ 제4항에 의한 투표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외파견, 타 기관파견 또는 휴직중인 자는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⑦ 학장의 임명건의 및 투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정한다.
안동대	① 단과대학에서 이른바 교황선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장후보자 3인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들은 해당 단과대학 모든 교수들의 성명이 적힌 설문용지에 최대 3명까지 학장 후보자로 선택. - 단과대학 학장과 교수회평의원회 의장 2인이, 수합된 설문용지를 개봉하여 최다득표순으로 상위 3인을 선정. ② 이 선정된 결과(순위는 표기하지 않음)를 총장에게 송부하면 그중에서 1인을 총장이 학장으로 임명.
전남대	<p>본부와 평의원회가 함께 단대학장추천위원회 구성 후 여론조사 실시(단대 규모별로 1인당 2, 3, 5명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위원장과 평의원회 의장이 여론조사 결과 집계 후 총장에게 결과 보고(결과 비공개) - 여론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총장이 예비후보 2-5명 지명 - 예비후보 소견발표, 서류제출 - 추천위원회의 후보 검증 진행, 평가서를 총장에게 제출 - 총장은 별도의 검증내용과 추천위원회의 평가서, 후보소견서 등을 기초로 최종 후보 선정 후 해당 단과대학에 통보.
전북대	<p>단대학장선거를 실시하여 총장이 투표함을 개표하여 결과 확인 후 다득표자를 임용하나 득표결과는 미공개.</p>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과대 여론조사 실시 - 조사결과는 즉시 개봉하지 않고, 얼마 후 여론조사결과(함)를 총장실로 가지고 가 단과대 교수회장과 총장이 함께 개봉 - 1위 후보자를 총장이 임명(즉 총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학장을 임명하는 방식) - 여론조사방식은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보통 단대 교수회 총회를 열어 ‘차기 학장직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이 누구인가’ 혹은 ‘단과대학 차기 지도자로서 적절한 사람이 누구인가’ 등의 구두질문에 대하여 무기명으로 이름을 1명씩 써내는 방식
충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 실시 - 총장 추천 4명, 단과대 교수회 추천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순위를 매기지 않고 추천후보를 총장에게 보고하면 후보들 중 총장이 임명
한국해양대	<p>학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단대에 따라 11명 또는 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지원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 실시: 단대 교원들이 공모 지원자 중 선호하는 사람을 1명 혹은 2명 선택하여 기표 - 심사위원회가 지원자들의 ‘대학발전방안’ 공개발표를 심사·평가 - 선호도 조사와 대학발전방안 심사 점수를 40:60 등으로 반영하여 순위를 매겨 총장에게 추천 -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총장이 결정하여 임용

단대학장을 선거로 뽑아서 총장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방식, 단순히 총장이 임명하는 방식, 아니면

그 절충으로 단대 교원들의 선호도조사에 의하여 1위와 2위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이 좋은지에 관해서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대학 총장에게 대학구성원들의 총의로 정당성이 부여되었으므로 단대학장은 그 의사에 의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서부터 단대학장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단대 교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는 것이 대학자치에 맞다는 의견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필자는 2018년에 당시의 제12대 부경대 교수회 임원으로서 단대학장 선거제의 도입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단대학장 선거제 규정을 마련하여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여 각 단대에서 그 채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 몇 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단대학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교원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Ⅲ. 현행 국립대 총장선거제도

1. 대학총장 선거의 법적 근거

국립대 총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p>「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투표</p> <p>교육공무원임용령</p> <p>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까지 교육부장관(국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학생 정원 등 해당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위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대학의 추천위원회는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대학의 교원 2. 해당 대학의 직원 3. 해당 대학의 재학생 4. 해당 대학의 졸업생 5.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수 합계의 1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합계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3.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2 이상일 것

④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 심층 면접, 정책 평가 또는 정책 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방법 및 결과 반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선정 결과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⑧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대학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학칙(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 국립대 총장선거의 관리주체

(1)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국립대 총장선거의 주관자이다.

추천위원회는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설치된 총장선거에 관한 대학구성원의 합의를 위한 의결기구다.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4항).

대통령령은 위원의 자격, 구성단위별 인원 비율, 여성위원의 비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즉 추천위원회는 ① 해당 대학의 교원, ② 해당 대학의 직원, ③ 해당 대학의 재학생, ④ 해당 대학의 졸업생, ⑤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명 이상 50명 이하(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조제1항).⁷⁾ 추천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대학의 교원·직원·재학생·졸업생 및 외부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동조제2항). 여기에서 위의 외부위원으로는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적극요건 이외에 해석상 해당 대학의 교원·직원·재학생·졸업생은 아니어야 한다는 소극요건이 요구된다.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동조제3항):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수 합계의 1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합계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일

7) 다만, 교육부장관이 학생 정원 등 해당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위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대학의 추천위원회는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동항단서).

것

3.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2 이상일 것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동조제4항).

현재 부경대학교 추천위원회는 총장선정규정 제4조에 따라 부경대학교의 교원 24명[그 중 8인은 교수회장 및 교수회장이 추천한 7인(이 가운데 적어도 2인은 여성)이고 단과대학의 학장이 추천한 16인(이 가운데 적어도 4인은 여성)], 직원 4명(공무원직장협의회, 민주노총 부경대지부에서 각 2인 추천), 재학생 2명(총학생회에서 추천), 졸업생 2명(총동문회에서 추천), 외부위원 3인(부산대학교수회, 경상대학교수회, 부산대노조지부 각 추천)을 총장이 임명하였다.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선정 결과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제6항).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동조제7항).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동조제8항). 이에 부경대학교는 2000년에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 왔고, 금년 2월에 이 학칙의 개정시에 동 학칙의 명칭을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이하 선정규정)으로 개정하였다. .

추천위원회가 “총장선거를 관리한다”는 말은 사실상 총장선거를 학내 다른 기구가 아닌 추천위원회가 담당하여 치른다는 의미이다. 부경대학교 총장선정규정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공보 및 소형 인쇄물의 접수 및 배포, 조교와 학생 중 선거권을 가지는 자의 범위 결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입후보필증의 교부,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 입후보자들의 소견 발표, 투개표 사무, 선거 결과 공표 및 1, 2위자의 추천 등 총장선거의 모든 주요절차를 추천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2) 위탁선거법에 따른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의 위탁의 의미

국립대와 사립대를 막론하고 대학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위탁선거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위탁선거법 제24조의3 제1항).

국립대 총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대학총장선거에 있어 활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것이다.

즉 위탁선거법은 대학 총장선거와 같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그러므로 국립대 총장선거에 위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며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해당 대학의 학칙에 정해진 사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조).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동법 제5조).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다만,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위탁선거 법령·학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이다(동법 제7조).

국립대 총장의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 즉 즉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동법 제12조). 이에 따라 부경대학교는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 가운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3년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조교·학생도 선거권을 가지도록 하였다(선정규정 제12조 제2항). 후보지원자의 부적격사유로서 다른 국공립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배제하고, 특별히 “본교 총장을 역임한 자”를 후보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대학 총장 단임제를 선택하였다(동규정 제13조 제2항).

또한 국립대학 총장의 위탁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관한 위탁선거법 규정들, 즉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2조).

3. 선거권자 및 투표 산정비율의 확정

(1) 학내구성원의 논의 방법

직원등 선거권자의 범위와 직원등의 선거권 비율을 정하는 문제 역시 추천위원회가 관리할 사항이다. 부경대학교 총장선정규정 선거권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정하거나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선정규정 제12조 제2항은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3년 미만자 제외),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조교·학생도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선거권자인 직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 정하고 선거권자인 조교·학생의 범위에 관해서는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밖에 선정규정 제12조 제3항은 “(직원·조교·학생)의 투표 산정비율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국립대학(그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의 직원, 조교, 학생 투표 산정비율을 고려하고 학내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여 직원·조교·학생의 투표 산정비율을 정하는 시한, 고려사항,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선정규정은 “학내구성원”이라 함은 부경대학교 총장, 전임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말한다(제2조 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투표 산정비율에 관한 “학내구성원의 합의”방법을 어떤 것으로 선택할지는 여러 옵션이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총장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총장추천위원회가 T/F에서 합의하도록 위임하여, 대학구성원들의 단체인 교수회, 직원단체, 학생단체 등의 대표들이 모인 T/F에서 합의하는 것은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국립대의 학내구성원에는 총장, 전임교원, 직원(교육부공무원과 회계직공무원), 조교,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등이 있는데, 이외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조합원으로 속해 있지 않은 5급 사무관급 이상의 교육부공무원은 이들 단체가 포섭하고 있지 않아서 대학구성원 전체가

비율협상 T/F에 대표를 과견하지는 못한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부경대학교의 경우에도 직원단체인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민주노총 부경대지부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아닌 대학 직원들이 있어서 이들 단체가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반면 교수회의 경우에는 모든 교수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교협의회나 총학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문제가 없다. 대학원생(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학부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와 같은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부경대학교 제5대와 제6대 총장선거에서는 교수회, 직원단체, 총학생회 등의 대표들이 모인 T/F에서 합의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금년 4월 1일 부경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COVID19로 인하여 화상회의로 진행)에서는 추천위원회에서 투표 산정비율 합의 T/F에 직원 등 투표산정비율을 합의하여 오도록 위임하여 합의결과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회의록 회람 과정에서 직원단체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4월 29일 제2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하였으나, 실시간 수업, 동영상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으로 인한 교내 인터넷망의 트래픽 폭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5월 4일로 연기하였다. 5월 4일 강당에서 개최된 속회에서는 교직원 간에 의견이 엇갈려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⁸⁾

5월 13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총장추천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안에 관하여 위원들의 찬반 의견 발표가 있었고, 표결을 한 결과 참석 위원 27명 중 제1안 22표, 제2안 3표, 제3안 2표로 제1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 (제1안) 추천위원회에서 투표 산정비율 합의 T/F에 직원 등 투표산정비율을 합의하여 오도록 위임하여 합의결과를 승인하는 방안
- (제2안) 추천위원회에서 투표 산정비율 합의 T/F에 직원등 투표산정비율을 합의하여 오면 그 합의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위임하는 방안
- (제3안) 추천위원회에서 교수회, 직원단체, 조교협의회, 학생회 등 대학구성원들의 단체에 투표 산정비율 합의 T/F에서 직원등 투표산정비율을 합의하도록 위임하는 방안⁹⁾

(2) 선거권자의 범위

부경대학교의 학내구성원은 총장, 전임교원(“전임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경대학교 소속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경대학교 소속 공무원인 직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부경대학교 소속 대학회계직원을 말한다), 조교(「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조교), 학생이다(선정규정 제2조 제8호). 그러므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간강사, 특임교원, 연구교수 등은 제외되어 있고, 직원단체간 협상을 통하여 총장선거의 선거권자의 범위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3년 미만자인 직원은 제외되어 있다(선정규정 제12조 제2항).

8) 이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소리와 영상 관련 트래픽 감소를 통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목적으로 ‘화상회의 진행 매뉴얼’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화상회의 진행시 교내 정보전산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9) 제3안은 직원단체에서 당초 제안하였던 “추천위원회와 관계 없이 투표 산정비율 합의 T/F에서 직원등 투표산정비율을 합의하는 것이라는 방안”을 수정제안한 방안이었다.

(3) 투표 반영비율

(가) 직전 총장선거에서의 반영비율과 협상 경과

현재의 부경대학교 총장이 재선에 성공한 2016년 제6대 총장의 선출방법은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후보지원자들의 정책평가 선호도조사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투표 반영비율은 협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평가인수]

교원	현원 (A1) 600명	휴직자 및 해외출장자(A2) 18명 선거권자 (A=A1-A2) 582명
직원	현원 (B1) 379명	휴직, 장기휴가 및 장기(해외)출장자 (B2) 34명 선거권자 (B=B1-B2) 345명
학생	현원 (C) 17명	선거권자 (C) 17명
조교	5년 이상 조교(D1) 14명	선거권자 (D1) 14명
	조교협의회(D2) 1명	선거권자 (D2) 1명
총선거권자수 (E=A+ B+ C+ D1+ D2) = 959명		
총유효선거권자수 (선거권 지분율을 감안한 총선거권자수)		

-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1차 투표 ($V1 = A + A \times 0.18 + A \times 0.02 + 1 + 1$) = 700.40명
 2차 투표 ($V2 = A + A \times 0.16 + A \times 0.01 + 1 + 1$) = 682.94명
 3차 투표 ($V3 = A + A \times 0.14$) = 663.48명

[교원 대비 직원 1표의 반영비율 = X]

- *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1차 투표	제2차 투표	제3차 투표
582 : 345 × X = 100 : 18	582 : 345 × X = 100 : 16	582 : 345 × X = 100 : 14
34,500X = 10,476	34,500X = 9,312	34,500X = 8,148
X=0.3037	X=0.2699	X=0.2362

[교원 대비 학생 1표의 반영비율 = Y]

- *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1차 투표	제2차 투표	제3차 투표
582 : 17 × Y = 100 : 2	582 : 17 × Y = 100 : 2	582 : 17 × Y = 100 : 2
1,700Y = 1,164	1,700Y = 1,164	1,700Y = 1,164
Y=0.6847	Y=0.6847	Y=0.6847

[교원 대비 조교(5년 이상) 1표의 반영비율 = Z1]

제1차 투표	제2차 투표
Z1 = 1/14표 = 0.0714	Z1 = 1/14표 = 0.0714

[교원 대비 조교(조교협의회) 1표의 반영비율 = Z2]

제1차 투표	제2차 투표
Z2 = 1표 = 1.0000	Z2 = 1표 = 1.0000

이 당시의 협상 경과를 보면 투표 반영비율을 직원들은 처음에 직원들의 반영비율로 100%를 요구한 다음, 이후 T/F 협상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50, 40, 30%로 요구수준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

하였다. 반면 당시의 협상의 주체이자 투표 반영비율을 정할 책임을 지는 주체인 교수회는 처음부터 16%를 요구한 이래 계속되는 T/F 협상회의에서도 일관되게 이 비율을 고수하였다. 이에 따라 직원단체는 자신들의 성의있는 협상 태도에 비하여 교수회가 경직되게 성의없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중도에 협상 파트너인 교수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이후 직원단체들은 대학본부 근처에 현수막을 걸고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하여 막판까지 선거를 보이콧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선거일 전날 교수회장과 직원단체들의 회장들 두 명 사이에 비율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제1차투표에서는 18%, 제2차투표에서는 16%, 제1차투표에서는 14%로 하자는 당시 교수회장의 제안을 직원단체대표들이 받아들여서 총장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협상에서의 고려요소들

국립대 총장선거 직원등 투표비율 협상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로는 비율협상의 주체, 비율협상 T/F의 운용원칙, 구체적인 비율 설정에 있어서 대학자치와 직능민주주의의 원리 및 타 국립대의 투표비율 반영 등으로 생각된다.

① 비율협상의 주체

비율협상의 주체는 추천위원회가 위임하여 T/F에 대표를 내보낸 교수회, 직원단체(부경대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민주노총 부경대지부), 조교협의회, 총학생회 등이다.

② 비율협상 T/F의 운용원칙

비율협상 T/F는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T/F 위원들 간의 비율협상 내용과 진행중인 절차 등은 녹음 등을 금지하여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최종 타결된 합의내용은 물론 공개한다. 협상의 목적은 총장선거에 있어서 해당 구성단위가 대학의 기능을 위하여 기여하는 부분만큼을 반영하는 합리적 비율을 합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협상 진행중에는 협상 파트너인 타 구성단위에 대한 공개비난을 금지하여야 하고, 합의는 T/F 위원 전원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각 T/F 위원은 각자가 대표하는 구성단위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상안을 각자를 T/F에 파견한 단체로부터 수임받아 와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나, 협상 타결을 위하여 파견 단체는 파견한 T/F 위원에게 협상의 전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의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대표 원리를 적용(대리의 원리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파견 단체는 파견한 T/F 위원의 협상내용이 단체의 의사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③ 구체적인 투표비율 설정

혹자는 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산정비율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인 선거권이므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나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전임교원의 투표 산정비율과 마찬가지로 10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선 국립대 총장선거는 그러한 공직선거나 지방선거가 아니다. 국립대 총장선거는 대학자치의 이론적 귀결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권한을 갖는 총장으로 임용될 후보자를 대학구성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제도로서 위탁선거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법에 따라 대학(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위탁선거법 제2조).

주지하다시피 법치국가가 충족해야 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성되며, 전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가 권력의 조직과 작용은 헌법이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들의 집합인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후자는 그러한 법의 내용은 자유와 평등에 합치되고 인권과 정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의 총장선거에 있어서의 대학구성원들의 선거권의 크기, 즉 각 구성단위의 투표 반영비율은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는 교환적 정의(Justice in exchange)나 피해배상에서 적용되는 교정적 정의(corrective justice)를 포괄하는 ‘평균적 정의(average justice; ausgleichende Gerechtigkeit)’가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말한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부합되어야 한다.¹⁰⁾ 배분적 정의는 명예, 금전, 권리 등의 배분에서의 정의로서 ‘동등함’이 충족될 때 지켜진다.

급부와 반대급부(대가), 피해와 배상 사이의 기계적 등가성을 의미하는 평균적 정의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의 본질적 원리는 “상응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에 비례하여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카임 페를만(Chaim Perelman)의 말처럼 배분적 정의는 “각자에게 동일한 것을, 각자에게 공과(merits)에 따라서, 각자에게 그 업적(works)에 따라서, 각자에게 필요(needs)에 따라서, 각자에게 그 지위(rank)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에게 법이 정한 바(legal entitlement)에 따라서 분배”하는 때에 지켜진다.

따라서 비율협상 T/F에서 직원등의 투표비율을 협상함에 있어서 교수회측은 대학자치와 직능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여 비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에 의하여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에서의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은 대학 총장선거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 학문연구와 교육 기능을 하는 대학의 본연의 역할에 있어 교원이 기여하는 비율과 직원이 기여하는 비율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같게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 배분적 정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대학의 과거의 총장선거에서의 합의된 직원등의 투표비율은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협상의 미숙이나 선거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합의하였을 수도 있는 등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총장선거에서 정해진 비율을 기점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협상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타 국립대의 투표비율 고려는 실제 국립대 총장선거 투표비율 협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고려요소가 아닐 수 없다. 대체로 규모가 크고 거점 또는 지역중심 국립대학교일수록 직원들 투표 비율은 낮게 합의되고, 규모가 작은 국립대학교의 경우 직원들 투표비율은 높게 합의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어떤 국립대에서 투표비율 협상을 하여 직원등의 투표 반영비율을 늘리게 되면 그 이후에 총장선거를 하는 다른 모든 국립대들에서 그 정해진 비율을 분자로 산정한 평균치를 고려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직원등의 투표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경대의 경우에는 선정규정에서 직원등의 “투표 산정비율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국립대학(그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의 직원, 조교, 학생 투표 산정비율을 고려하고 학내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제12조 제3항) 시행세칙에서는 학내 구성원의 투표 산정비율 설정에 참고하는 주요 국립대학을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10개 학교로 제한함(세칙 제4조 제2항, 별표 2)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끊고자 하였다.

10) 김두진 외, 「(법학초보자를 위한) 생활과 법률」, 동방문화사, 2020, 20-21면.

모든 국립대 교수회는 자교의 총장선거를 위한 직원등의 투표비율 협상 결과가 자교의 금번의 총장선거만이 아니라 향후 전체 국립대 총장선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합리적인 협상안의 마련 등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협상 진행을 협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표에게 맡겨서 최대한 대학의 직능민주주의에 맞는 비율의 각 직능단위별 투표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부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적용된 비율>

대학명(시기)	교원	비교원 합계	직원	조교	학생
강원대(2020.3)*	100%	20%	16%		4%
경북대(2018.2)**	100%	23.75%	18.75%		5%
경상대(2020.2)	100%	22.744%	16.088%	2.540%	4.116%
공주대(2019.2)	100%	19.90%	19.90%		
부산대(2015.11)***	100%	13.98%	11%(526명)	1.64%(22명)	1.34%(18명)
부산대(2020.2)****	100%	21%	13.1167%(493명)	3.9667%(198명)	3.9167%(100명)
전남대*****					
전북대(2018.10)	100%	17.83%	17.83%		
제주대(2017.11)	100%	19.00%	13%%	2%	4%
충남대(2019.11)	100%	22.744%	16.088%	2.540%	4.116%
충북대(2018.4)	100%	19.00%	16%		3%
평균	100%	19.883%	17.042%		2.841%

*강원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 세칙에서 이러한 비율을 정하였다. 직원과 학생측은 학내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비율 선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교수회측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교원들의 온라인투표로 이러한 비율을 확정하였다.11)

**경북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17조제3항에 득표 반영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위의 표의 수치는 교원을 100으로 재산정한 비율이다.

1. 교원선거인 : 80%
2. 직원선거인 : 15%
3. 학생선거인 : 4%
4. 나머지 1%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사정을 감안하여 직원(조교 포함) 및 학생선거인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위 표의 수치는 2015년의 제20대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대학구성원간에 합의된 비율임.

****2020년 2월 4일에 실시된 제21대 부산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인수(투표 반영 비율)는 전임교수 전체 1189명(100%)과 직원 493명(13.1167%), 조교 198명(3.9667%) 등 총

11) 연합뉴스, “총장선거 '교수 1표=학생 500표'...직원·학생 "투표 안 해"”2020.1.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44200062>.

1880명이었다.¹²⁾ 부산대는 2019년 7월부터 선거비율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강사는 크게 반발하면서 단식농성을 하였고, 학생들의 경우 처음에 1인 1표(학생수 약3만명)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11월경에 마무리가 되어 학생의 선거인수(투표 반영비율)은 100명(3.9167%)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학생회장이 12월에 교체가 되면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비율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학부생대표만 참여하는 형태가 되다보니, 결국 학생회측에서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선거에 불참하게 되었다.

*****전남대학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개시(2017.5.10.) 후 현재까지 아직 총장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음.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의 경우에는 총장선출 방법이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¹³⁾ 추천위원회가 지원자 중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유무 등을 고려해 적격 총장후보대상자를 선정한 후, 소견발표회를 진행해 그 가운데 5인의 총장예비후보자를 선정한다. 이 5인을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평가와 정책평가가 진행된다. 무작위로 선택된 교원과 직원, 사전에 정책평가단 등록을 한 학생이 정책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원과 학생의 정책평가 결과는 각각 교원의 14%, 9.5%로 환산된다. 정책평가단은 △교육, 연구 등 정책과 실현 가능성(40%) △비전과 리더십(40%) △국제적 안목(20%) 항목에 대해 각 후보자에게 1~3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나온 정책평가 결과가 75%, 추천위원회 투표 결과가 25%의 비율로 합산돼 총장후보자 3인이 선정되고, 이사회가 그 3명 중 최종 1명을 선택했다. 이후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을 거쳐 총장이 최종적으로 임명되었다. 서울대의 선출방법에서도 직원, 학생 등의 정책평가 반영비율을 정하는 것이 똑같이 문제가 된다.

투표 반영비율은 해당 구성단위의 전체 투표자의 개별 후보지원자에 대한 투표수를 몇 퍼센트로 반영할지의 비율. 따라서 해당 구성단위의 선거권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 구성단위에 속하는 선거권자 1인이 전체 총장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아지고 그 수가 적을수록 그 영향력은 커진다. 그러므로 투표 반영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인원의 수와 그 중 실제 투표를 하는 비율에 관한 과거의 경향¹⁴⁾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교수회가 직원단체·조교단체·학생회와 각별로 협상할지 전체 단체들이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병합하여 협상할지는 기술적 문제로서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있어 이론적으로는, 학생회의 시각에서 교수만이 아니라 직원도 총장선거에서 자신들에 비하여 높은 투표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라는 사실이 부각될 수 있다면 교수회 입장에서는 병합협상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조교단체와 학생회의 시각이 심하게 직원들에게 경도되어 있는 경우 병합협상은 여럿이서 교수회를 공격하는 협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자교의 교수회와 다른 단체들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해당 학교에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병합협상의 경우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투표 반영비율을 기득권자인 교원과 직원 구성단위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

12) 한겨레신문, 김광수 기자 “학생 투표 빠진 부산대 총장 선거…1위는 차정인 교수,” 한겨레신문 2020.2.5.

13) 이하의 내용은 서울대학보, 김창연 기자 “총장선출제도, 당신의 선택은,” 2019.5.5.

14)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인원수(A)가 많다는 것은 그 구성단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투표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중 실제로 투표하는 비율(B)이 낮다면 그 영향력은 감소된다. 일반적으로 교원의 경우 A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B가 낮고, 직원의 경우 A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B가 높다.

3. 후보지원자의 연구윤리검증의 범위

부경대학교 총장선거에서는 후보지원자로 입후보하는 단계에서 입후보 신청서의 첨부서류의 하나로 연구실적목차를 제출하여야 한다(선정규정 제18조, 시행세칙 제11조제2항, 별지 제12호 서식).

추천위원회는 총장선거에서 제1위와 제2위를 한 총장후보자 2인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연구윤리 검증을 의뢰한다(선정규정 제26조 제1항).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증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동조 제2항). 만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제1위와 제2위를 한 총장후보자 2인 중 한 사람 이상의 연구윤리 위반을 통보받은 경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5조에 따른 해당 총장후보자의 결정을 무효로 의결할 수 있다(선정규정 제27조제1항).

그런데 연구윤리검증과 관련된 교육부훈령으로서 2007년 2월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은 2009년 9월에 개정되면서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던 연구자의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성 검증 시효를 폐지하였다.¹⁵⁾

이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가 총장선거에서 제1위와 제2위를 한 총장후보자 2인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연구윤리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그 검증은 언제부터 출간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2009년 9월 23일에 개정되기 전의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호)에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제12조 제1항)고 하여 진실성 검증 시효를 규정하고 있었다.¹⁶⁾

만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성 검증 시효규정의 성질을 실체법 규정으로 파악한다면 검증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개정조항의 소급효는 부정되므로 관련규정이 폐지가 된 시점인 2009년 9월 이후의 연구논문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성 검증 시효규정의 성질을 절차법 규정으로 보는 한 진실성 검증 시효의 폐지는 소급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이 폐지가 된 시점이 아니라 해당 지침이 처음 제정된 시기인 2007년 2월까지 소급한다는 결론이 된다. 후자가 타당하다.

이에 따라 총장선거에서 제1위와 제2위를 한 총장후보자 2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도 위의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전국의 국립대 총장선거규정상의 총장선거에서 제1위와 제2위를 하여 교육부에 추천되는 후보지원자에 대하여 2007년 2월 이후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연구윤리 검증을 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부경대의 경우 이번 총장선거를 맞아 그러한 취지를 반영하되 학위논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위논문 및 2007년 2월 이후 연구실적”에 대하여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내용으로 선정규정과 시행

15)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은 2007년 2월의 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부칙 제2조 본문).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중 2002년에서 2004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은 2007년 2월의 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동조 단서).

16) 다만 동조 제2항에는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예외가 인정되고 있었다.

세칙을 개정하였다. 그 개정을 앞두고 조사해본 결과 이미 강원대를 비롯한 일부 국립대는 2007년 2월 이후 연구실적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아직 그렇게 규정하지 않은 대학도 많은 실정이다.

논의사항 3. 국립대학 연구 결과물 미제출 관련 연구비 제도 개선방안 - 이한수(강원대, 교수회장)

붙임 3-1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립대학 연구 결과물 미제출 관련 연구비 제도개선 방안 안내

1. 관련 : 국회 박찬대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국립대학정책과-7785, 2019.11.6.)
2. '19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의 환수실적 부진에 대해 국립대학 연구비 제도개선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3. 각 대학은 제도개선 내용을 관련 규정, 지침에 반영(~'20.2)하고, 기존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의 연구비 환수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환수대상액이 없는 대학도 관련 규정을 개선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제도개선 및 환수실적은 '20년 교연비 지급계획 협의와 연계 예정임

붙임 국립대학 연구 결과물 미제출 관련 연구비 제도개선 1부. 끝.

국립대학정책과장

수신자 국립대학교, 국립교육대학교, 국립전문대학

주무관 행정사무관 국립대학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국립대학정책과-8632 (2019.12.12.) 접수 연구지원부-15055 (2019.12.12.)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 / www.moe.go.kr
전화 044-203-6806 /전송 044-203-6908 / judy2773@moe.go.kr / 부분공개

국립대학 연구 결과물 미제출 관련 연구비 제도개선(안)

□ 검토 배경

- '19년 국정감사 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산대의 교내 연구비 지급 이후 연구결과물 미제출*에 따른 환수실적 부진을 지적
 - * 연구과제 76개, 환수대상 연구비 1,274백만원(환수액 229백만원, 환수율 18%)
- 실효성이 결여된 환수 관련 규정* 등으로 환수실적이 저조하고, 미제출자에게도 신규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연구비 관련 제도개선 요구
 - * 본인이 반담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구비 회수를 강제할 규정 미흡

□ 추진 경과

- 국립대학 대상, 교내 연구비 실태조사('19.10.28~11.13)
- 교내 연구비 실태조사 자료 분석('19.11.14~11.29)
- 교내 연구비 관련 제도개선(안) 관련 주요대학 업무협약('19.12.5)

□ 연구결과물 미제출 현황 및 문제점

(1) 연구결과물 미제출에 대한 연구비 미환수 현황

- (미환수 현황) 전체 39개 국립대학 중 결과물 미제출로 인한 연구비 환수대상액은 15개교, 163명(177개 과제), 1,669백만원('19. 10월말 기준)
 - 15개교 중 충남대, 부산대의 미환수액이 1,350백만원으로 전체 81% 차지
 - ※ 미환수액 : 충남대(740백만원), 부산대(610백만원)

【교내연구비 미제출로 인한 환수대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환수대상자	대상과제수	환수대상액	환수 실적	미환수액
재직자	107	118	1,139	90	1,049
퇴직자	56	59	641	20	621
총계	163	177	1,780	110	1,670

(2) 연구비 환수실적 부진 사유

- **(신규지원 제한규정 미비)** 연구결과물 미제출 교원에 대해 신규과제 지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미제출자에게 연구비 추가지원 사례 발생
 - 신규과제 제한규정 운영 대학 중 14개교는 연구비 반납 또는 결과물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기간(1~5년) 이후 신규지원 가능

【연구결과물 미제출자 신규과제 지원 관련 규정 현황】

(단위 : 대학수)

미제출자 신규지원	신규지원 제한(31교)				
	기간 미설정	1년	2년	3년	5년
8교	17교	1교	7교	4교	2교

- **(연구비 회수 규정 미흡)** 연구비 회수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급여공제 등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비 회수를 강제할 규정 미흡
- **(퇴직자 관련 규정 미비)** 퇴직예정 교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연구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퇴직자에 대하여 연구비 환수 애로

□ 연구비 환수 관련 제도개선(안)

- **(신규지원 제한규정 보완)** 연구결과물 미제출자는 연구비 반납 완료 또는 결과물 제출 시까지 모든 교내 연구비 지급 제한
- **(연구비 회수절차 실효성 강화)** 연구비 신청 단계(연구계획서 제출)에서 결과물 미제출 시 급여공제를 통한 반납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 **(퇴직자 관리 강화)** 퇴직 전 수행하는 마지막 연구과제는 연구비 일부를 집행보류하고, 최종 결과물 제출 확인 후 잔액 지급처리
 - 명예퇴직 등 중도퇴직자의 경우 연구결과물 제출여부를 의무이행 확인사항에 반드시 포함하여 확인 후 처리 조치

□ 행정 사항

- 각 대학은 제도개선(안) 내용을 관련 지침에 개정·반영(~'20.2)하고, 기존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의 연구비 환수를 위해 신속한 조치 실행
- 대학별 제도개선 및 환수실적은 '20년 교연비 지급계획 협의와 연계 예정

붙임

연구 결과물 미제출자 연구비 미환수액 현황(19.10말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대학명	환수 대상자수	환수 대상교제수	환수 대상액(A)	환수액 실적(B)	미환수액 (C=A-B)	퇴직자 미환수액(인원)
1	경남과기대	1	1	7,000	0	7,000	-
2	경북대	4	4	73,500	0	73,500	18,500(1)
3	공주대	1	1	1,844	0	1,844	-
4	군산대	2	2	10,000	0	10,000	-
5	금오공대	1	1	10,000	0	10,000	-
6	목포대	1	1	3,000	0	3,000	3,000(1)
7	부경대	3	3	60,000	0	60,000	-
8	부산대	48	48	720,875	110,478	610,397	321,297(25)
9	전남대	2	2	33,868	0	33,868	-
10	진주교대	12	12	68,000	0	68,000	6,000(1)
11	창원대	2	2	13,000	0	13,000	13,000(2)
12	충남대	77	91	740,955	0	740,955	249,716(24)
13	충북대	4	4	22,493	0	22,493	4,510(1)
14	한국교원대	1	1	5,000	0	5,000	5,000(1)
15	한국체육대	2	2	10,800	0	10,800	-
총계		162	176	1,780,337	110,478	1,669,859	621,023(56)

※ 미환수액(C)은 재직자+퇴직자의 미환수액 합계임



「실사구시(實事求是)」

강원대학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 지침 전부개정(안)
의견 조회

1. 관련: 산학연구기획부-565(2020. 1. 23.)
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 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 31.(금)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주요 개정사항
 - 결과물 미제출자는 지원금 반납 완료 또는 결과물 제출 시까지 모든 학술연구진흥사업 지급 제한
 - 사업 신청 단계에서 결과물 미제출 시 급여공제를 통한 반납동의서 제출 의무화
 - 퇴직예정자에 대해 최종 결과물 제출 확인 또는 확약 후 지원금 지급처리
 - 나. 개정사유
 - '19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제도개선 내용 반영 요구

- 붙임 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 지침 신규대비표 1부.
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 지침 개정 전문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산학연구기획부장 ^{김병준}

수신자 17 춘천전체, 18 삼척전체

주임	김규림	팀장	김병준	산학연구기획부 장	2020.01.28. 채희종
----	-----	----	-----	--------------	--------------------

협조자

시 행 산학연구기획부-586 (2020.01.28.) 접 수 대학평의회-150 (2020.01.28.)
 우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http://www.kangwon.ac.kr>
 전화번호 033-250-8085 팩스번호 033-259-5524 / kim0517@kangwon.ac.kr / 공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지침

제정 2016.01.01.

개정 2020.03.02.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진흥사업”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산학협력단 회계(간접비) 및 대학회계 재원의 학술연구진흥사업을 말한다.
2. “지원제한”이라 함은 본 지침에서 정한 지원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시행 과제형 사업 및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학술연구진흥사업) ① 산학협력단 회계(간접비) 재원의 산학협력단 시행 학술연구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과제 유치신청 지원사업
2. 박사후 연구원(Post-Doc) 활용 지원 사업
3. 우수연구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
4.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지원 사업
5. 특허비용 지원 사업
6.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교정료 지원 사업
7.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사업

② 대학회계 재원의 산학협력단 시행 학술연구진흥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과제형 사업(기초연구, 신입교원

정착연구)

2. 국책사업 및 기타 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 지원 사업

3. 대학원생 논문게재 장려금 지원 사업

③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결과물관리) ① 학술연구진흥사업을 지원받아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 연구원(Post-Doc) 활용 지원 사업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과제형 사업(기초연구, 신입교원 정착연구)

② 결과물을 미제출 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금 환수 조치를 위해 급여공제를 통한 반납동의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④ 퇴직예정자가 학술연구진흥사업에 선정되거나 수행중인 경우 결과물 제출 또는 결과물 제출 확약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

1.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각 사업이 정하는 결과물 제출기한 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3조에 해당하는 타 사업과 이중지급 된 경우

3. 관련 증빙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환수 내용 및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제4조 제3항에

의거 급여공제를 통하여 연구비를 환수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담당 기관(부서)의 사정에 따라 지원제한 대상이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시작일 이후 통보된 경우 지원제한 대상자의 해당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술연구진흥사업을 지원제한 한다.

1. 제4조 1항의 사업을 지원받고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자

② 사업의 선정 이후 지원제외 대상이 된 경우는 해당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각 사업이 정하는 결과물 제출기한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반납 완료 또는 결과물 제출 시까지 모든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④ 지원제한 대상이 제3조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진흥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별 신청 마감일 전까지 지원제한이 종료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시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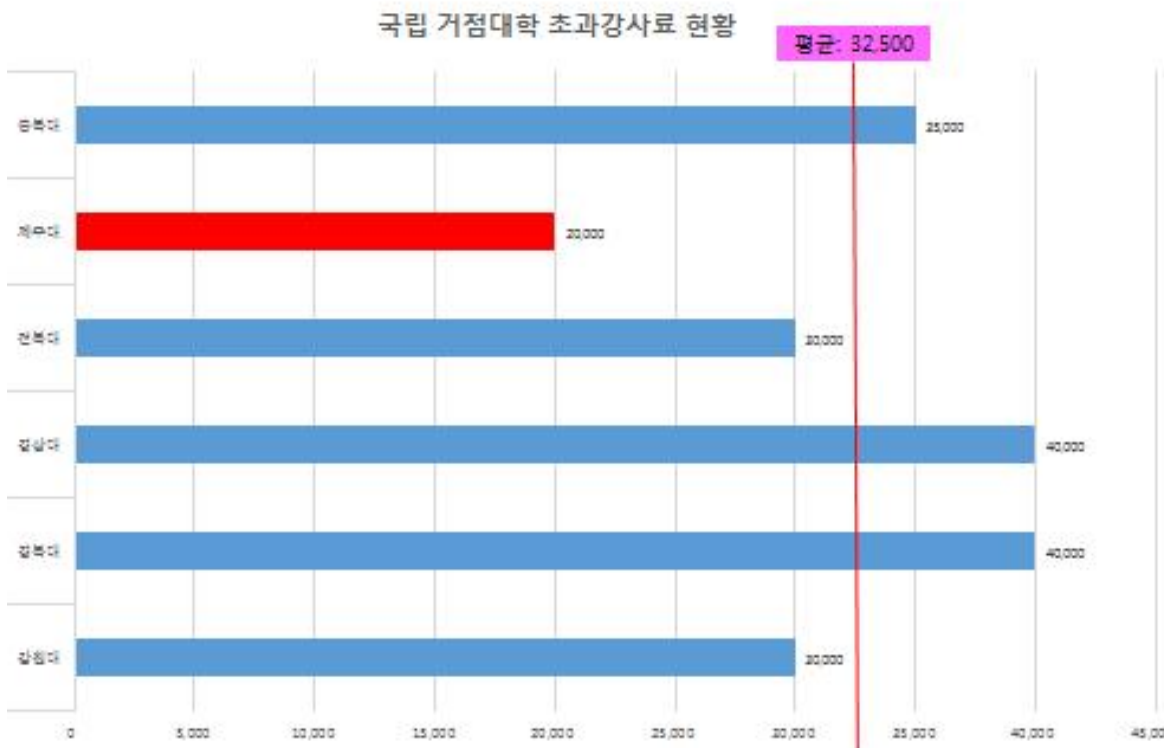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학술연구진흥사업)</p> <p>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생 략) 3. <u>전문기술지원인력 지원 사업</u> 4. <u>국외연구인력 초빙 지원 사업</u> 5. <u>연구과제 참여연구원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u> 6. <u>우수연구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u> 7. <u>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지원 사업</u> 8. <u>특허비용 지원 사업</u> 9. <u>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사업</u> 10. <u>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사업</u> 11. <u>학(예)술행사 개최경비 지원 사업</u> <p>②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과제형 사업(전임교원 기본연구, 신임교원 정착연구)</u> 2. (생 략) 3. <u>스타논문 포상금 지원 사업</u> 4. (생 략) 	<p>제3조(학술연구진흥사업)</p>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행 제6호와 같음) 4. (현행 제7호와 같음) 5. (현행 제8호와 같음) 6. (현행 제9호와 같음) 7. (현행 제10호와 같음) <p><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과제형 사업(기초연구, 신임교원 정착연구)</u> 2. (현행과 같음)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행 제4호와 같음)
<p>제4조(지원제한 대상) <u>지원제한 대상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술연구진흥사업을 지원 받고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제재대상으로 분류된 자</u> 2. <u>강원대학교 시행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과제형 사업을 지원받고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제재대상으로 분류된 자</u> 3. <u>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자</u>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4조(결과물관리) ① <u>학술연구진흥사업</u>을 지원받아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박사후 연구원(Post-Doc) 활용 지원 사업</u> 2. <u>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과제형 사업(기초연구, 신입교원 정착연구)</u> <p>② <u>결과물을 미제출 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③ <u>제2항의 지원금 환수 조치를 위해 급여공제를 통한 반납동의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u></p> <p>④ <u>퇴직예정자가 학술연구진흥사업에 선정되거나 수행중인 경우 결과물 제출 또는 결과물 제출 확약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u></p>
<p>제5조(지원제한 범위) ① <u>제4조의 지원제한 대상은 제3조의 학술연구진흥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선정 이후에 제4조의 지원 제외 대상이 된 경우는 기 선정 사업에 한해 해당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신 설></u></p>	<p>제5조(지원금환수)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각 사업이 정하는 결과물 제출기한 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u> 2. <u>제3조에 해당하는 타 사업과 이중 지급 된 경우</u>

현행	개정안
	<p>3. <u>관련 증빙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u></p> <p>② <u>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환수 내용 및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u></p> <p>③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제4조 제3항에 의거 급여공제를 통하여 연구비를 환수한다.</u></p> <p>④ <u>산학협력단장은 담당 기관(부서)의 사정에 따라 지원제한 대상이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시작일 이후 통보된 경우 지원제한 대상자의 해당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u></p>
<p><u>제6조(지원제한 기간) ① 지원제한 기간은 제4조를 담당하는 기관 및 부서의 지원제한 기간을 따른다.</u></p> <p>② <u>학술연구진흥사업의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지원제한 기간 전에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u></p> <p>③ <u>제4조의 지원제한 대상이 제5조의 지원제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별 신청 마감일 전까지 제1항의 지원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u></p>	<p><삭 제></p>
<p><신 설></p>	<p><u>제6조(지원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술연구진흥사</u></p>

현행	개정안
	<p>업을 지원제한 한다.</p> <p>1. 제4조 1항의 사업을 지원받고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자</p> <p>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자</p> <p>② 사업의 선정 이후 지원제외 대상이 된 경우는 해당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③ 각 사업이 정하는 결과물 제출기한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반납 완료 또는 결과물 제출 시까지 모든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을 제한한다.</p> <p>④ 지원제한 대상이 제3조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진흥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별 신청 마감일 전까지 지원제한이 종료되어야 한다.</p>
<p>제7조(환수 기준) ① 산학협력단장은 담당 기관(부서)의 사정에 따라 제4조의 지원제한 대상 및 제6조의 지원제한 기한 등이 제5조의 지원제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시작일 이후 통보된 경우 지원제한 대상자의 해당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환수 내용 및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p>	<p><삭 제></p>

논의사항 4. 각 대학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지급현황



논의사항 5. 기타 논의 및 자유 토론

색 지

색 지

별첨 1. 국교련 회칙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칙

2017.08.18.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

◎ 제1조 [명칭]

본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약칭 “국교련”)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가 연대하여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교육,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회원]

본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한다.

◎ 제4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상임회장교에 둔다.

◎ 제5조 [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상임회장의 임기 만료 월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인 이상의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서면위임을 포함한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⑤ 총회는 출석 회장(의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불참 시 총회에서의 권한행사를 소속대학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⑦ 회장단의 2/3 이상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서면 결의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에는 재적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제6조 [회장단]

- ① 본회에는 상임회장 1인을 둔다.
- ② 본회에는 23인 이내로 공동회장을 두되,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전임교원 수 500인 이상의 회원교 대표
 2. 교육대학(교원대 포함) 중 3개 회원교 대표

3. 1호와 2호에 속하지 않은 대학 중 8개 회원교 대표

◎ 제7조 [회장단의 선출]

- ① 각 회원교의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은 각 회원교가 1표씩 가지며, 위임받아 출석한 대리인은 선거권만을 가진다.
- ② 상임회장은 소속대학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자 중에서 공동회장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③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공동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④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동회장은 교육대학(교원대 포함) 교수(협의)회 회장(의장)들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6조 제2항 제3호의 공동회장은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6조 제2항 제2호에 속하지 않는 회원교의 회장(의장)들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 [회장단의 임기]

- ①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상임회장이 상임회장의 직을 사퇴하거나, 유고의 사유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가 3월 이상이면 공동회장단에서 재 선출 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으며, 3월 미만이면 공동회장단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공동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회원교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 ④ 제2항에 의한 상임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와 제3항의 승계에 의한 공동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9조 [회장단의 직무]

- ① 상임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단이 처리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 ② 공동회장은 상임회장의 직무를 권역별 또는 직능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 제10조 [회장단회의]

- ① 회장단회의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단 구성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 ② 상임회장은 회장단회의의 의장을, 사무총장은 회장단회의의 서기를 겸한다.
- ③ 감사와 고문, 자문위원 및 정책위원, 특별위원, 전문위원은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④ 회의는 회장단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장단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장단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 2. 상임회장이나 회장단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에 상정한 안건
 -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4. 회장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 [감사]

- ① 본회에는 감사 2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퇴나 기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8조 제3항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사무처]

- ① 본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전문위원 및 간사 약간 명을 둔다.
- ③ 사무총장은 상임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회장단의 직무를 보좌한다.
- ④ 전문위원과 간사는 상임회장이 임명하며, 상임회장의 직무를 보조한다.

◎ 제13조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상임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임 상임회장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회원교 전임 교수(협의회 회장(의장) 중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4조 [정책위원회]

- ① 본 회의 정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단을 보좌하는 정책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총회와 회장단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본회에 회장단회의의 결정으로 회장단을 보좌하는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6조 [재정]

- ① 회원교는 총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연회비와 사업에 따른 분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7조 [회원자격의 정지]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 [일반 관례]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19조 [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서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칙은 1994년 04월 01일 총회에서 제정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1997년 04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1999년 04월 0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0년 0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2년 02월 0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4년 04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0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04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0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9년 0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0년 02월 0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1년 04월 0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0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03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09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08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 2. 회원교 연락처

2020. 5. 4. 현재

	대학	직책	성명	연구실 전화	휴대폰 번호	이메일	임기
1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철원	033-760-8786	010-6376-2772	cwpark1@gwnu.ac.kr	2019.9.18~ 2021.9.17
		부회장(원주캠퍼스)	신준	033-760-8744	010-9430-2142	jshin@gwnu.ac.kr	
		사무처장	김세훈	033-640-2367	010-9123-9867	vitamineshkim@gmail.com	2019.12.10 ~2021.9.17
		정책국장	한기련	033-640-2859	010-2340-8606	hanaro@gwn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gwnupa@gwnu.ac.kr *전화번호: 033-640-2749 *fax: 033-640-2749 *담당자:김소연 ■주 소: (25457)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214호 교수회 010-9305-8230							
2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한수	033-250-8530	010-7363-5124	hslee@kangwon.ac.kr	2020. 3.~ 2022. 2.
		부회장(춘천)	남우동	033-258-2308	010-5360-4345	osnamkangwon.ac.kr	
		사무총장(춘천)	박태현	033-250-6526	010-8399-4141	pthkangwon.ac.kr	
		부회장(삼척)	유원근	033-570-6645	010-4380-5080	ywkkm@kangwon.ac.kr	
		부회장(삼척)	정미경	033-540-3351	010-8604-0707	mkjoeng@kangwon.ac.kr	
		사무총장(삼척)	강윤식	033-570-6592	010-4550-8207	kangys@kangwon.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ofessociation@kangwon.ac.kr *전화번호: 033-250-7328 *fax: 033-259-5502 (가급적 메일로 부탁) *담당자: 이수미 ■주 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교수회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	의장	김성호	055-751-3666	010-2831-1222	shkim15@gntech.ac.kr	2019.07~ 2021.06
		부의장	최경옥	055-751-3256	010-7119-7252	choiok@gntech.ac.kr	
		사무국장	권혁진	055-751-3427	010-7773-5502	residusk@gntech.ac.kr	
		간 사	신재익	055-751-3663	010-2805-4534	sj@gntech.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gntech.ac.kr *전화번호: 055-751-3708 *담당자 : 김숙민 ■주 소: (52725)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구본관 1층 109호 교수회							
4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만	053-950-5328	010-9814-8665	manpark@knu.ac.kr	2020.03~ 2022.02
		부의장	김성룡	053-950-6223	010-3432-2947	kimsr@knu.ac.kr	
		부의장	조광수	053-950-5831	010-8912-0939	polphy@knu.ac.kr	
		부의장	오세욱	054-530-1227	010-6658-2379	osw@knu.ac.kr	
		사무처장	이광률	053-950-7373	010-6444-7755	georiver@knu.ac.kr	
		사무부처장	이규필	053-420-4924	010-9391-2982	gdfeel@hanmail.net	
		사무부처장	김명옥	053-950-5792	010-8589-3333	ok4325@knu.ac.kr	
		사무부처장	백승민		010-7220-7082	smpaek@kn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fa@knu.ac.kr *전화번호: 053-950-5015 *fax: 053-959-5266 *담당자: 배원미 ■주 소: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교수회 (복지관 3층)							
5	경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백승철	055)772-8084	010-3874-6013	scbaik@gnu.ac.kr	2020.03~ 2022.02
		부회장	윤석주	055)772-2214	010-9767-0542	ysj@gnu.ac.kr	
		부회장(통영)	정우건	055)772-9151	010-3865-6677	jwg@gnu.ac.kr	
		부회장(칠암)	화정석	055)750-8924	010-2777-6243	seogee@gnu.ac.kr	
		정책국장	이선애	055)772-2173	010-7471-3433	sunaelee@gnu.ac.kr	
		사무국장	이정민	055)772-1083	010-9223-2615	poohcrescentia@hanmail.net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gnu.ac.kr *전화번호: 055-772-0051 *fax: 055-772-0053 *담당자 : 신영선 ■주 소: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본부 5층 514호 교수회 사무실							

6	경인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호	032-540-1223	010-3199-2702	kimho@ginue.ac.kr	2020.02~
		부회장	이경민	031-470-6323	010-2044-3271	leekm@ginue.ac.kr	
		부회장	박재근	031-470-6246	010-2257-9879	jkpark@ginue.ac.kr	
		총무	윤성준	032-540-1251	010-9178-3430	yun-111-@ginue.ac.kr	
		총무	황필아	032-540-1430	010-9188-2521	pilahh@ginue.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ginue.ac.kr *전화번호: 032-540-1220 *fax: 032-540-1310 ■주 소: (2104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412호							
7	공주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명숙	041-850-1628	010-3446-6168	eduhan@gjue.ac.kr	2020.04~ 2022.03
		부회장	김한제	041-850-1603	010-2594-2830	hjkim@gjue.ac.kr	
			조혜영	041-850-1727	010-8935-6930	johye@gjue.ac.kr	
		총무	조윤조	041-850-1683	010-7452-5263	choyooncho@gjue.ac.kr	
			김범수	041-850-1711	010-7104-2422	reflets@gjue.ac.kr	
	손재천	041-850-1666	010-2622-5462	jsohn74@gjue.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ofcoun@gjue.ac.kr. 전화번호: 041-850-1727 *담당자: 조혜영 교수 (부회장) ■주 소: (3255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입지관 509 한명숙 교수 연구실							
8	공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유석호	041-850-0353	010-7107-5938	seanryu@kongju.ac.kr	2018.9.1~ 2020.8.31
		부회장	신호상	041-850-8811	010-4351-8812	hshin@kongju.ac.kr	
		부회장	김동선	041-521-9360	010-2408-8641	dskim@kongju.ac.kr	
		부회장	윤혜려	041-330-1501	010-5305-5543	avonle@kongju.ac.kr	
		부회장	김희경	041-850-0304	010-8193-3938	hkkim@kongju.ac.kr	
		사무국장	김찬수	041-850-8565	010-7137-8565	chanskim@kongju.ac.kr	
		간사	이철우	041-850-8374	010-7581-8802	leecu@kongju.ac.kr	
		간사	박현상	041-521-9157	010-3420-7584	vandamm@kongju.ac.kr	
		간사	조근자	041-850-0333	010-3390-7920	kjcho@kongj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of@kongju.ac.kr *전화번호: 041-850-8760 *fax: 041-850-8761 *담당자: 김가희 ■주 소: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사범대학관(구 대학본부) 203호 교수회사무실							
9	광주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방기혁	062-520-4193	010-9213-4835	ghbang@gnue.ac.kr	2019.8.29~ 2021.8.28
		부회장	구재명	062-520-4217	010-8905-6467	jg349@gnue.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nykim4190@gnue.ac.kr *전화번호: 062-520-4190 *fax: 062-520-4199 *담당자: 김남이 ■주 소: (61204)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풍향동 1-1)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10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유경숙	063-469-4815	010-5637-1071	ksyou@kunsan.ac.kr	2020.03~ 2022.02
		상임부의장	원명수	063-469-4630	010-9197-9157	wondain@kunsan.ac.kr	
		부의장	정현채	063-469-1822	010-2703-2565	hcx@kunsan.ac.kr	
		부의장	송병호	063-469-4524	010-6629-4260	bhsong@kunsan.ac.kr	
		사무국장	조혜영	063-469-4804	010-7541-7958	elfish80@kunsan.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kunsan.ac.kr *전화번호: 063-469-4278 (평의회사무실) *담당자: 김우형 조교 ■주 소: (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미룡동) 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2층 교수평의회							
11	금오공과 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호	054-478-7656	010-9502-4387	kimsh@kumoh.ac.kr	2019.03~ 2021.02
		부회장	한규필	054-478-7525	010-4523-4724	kphan@kumoh.ac.kr	
		사무국장	임기무	054-478-7780	010-8605-4791	kmlim@kumoh.ac.kr	
		감사	채 석	054-478-7451	010-5175-4262	schae@kumoh.ac.kr	
		감사	박노진	054-478-7736	010-7736-4337	njpark@kumoh.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of@kumoh.ac.kr *전화번호: 054-478-6963 *fax: 054-478-6964 *담당자: 김민아 ■주 소: (39177)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12	대구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배상식		010-2801-0468	sasbae@dnue.ac.kr	2019.03. ~ 2020.03. (일단유지)
		부회장	김유정		010-9895-2164	yjkim@dnue.ac.kr	
		부회장	손교용		010-4652-7719	gysohn@dnue.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dnue.ac.kr *전화번호 : *fax : *담당자: ■주 소: (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배상식 교수님							

13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박양균	061-450-2422	010-3601-1951	ykpark@mokpo.ac.kr	2017.04.~ 2020.05
		부의장	조광문	061-450-2653	010-444-2577	ckmoon@mokpo.ac.kr	
		사무처장	박시형	061-450-2662	010-3457-2662	shp@mokpo.ac.kr	
		편집위원장	최재민	061-450-2543	010-2605-8472	jaemin22@gmail.com	
		■사무실: *이메일주소: pyung@mokpo.ac.kr *전화번호: 061-450-2961 *fax: 061-450-2974 *담당자: 박연화 ■주 소: (58554)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교수협의회					
14	목포해양 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노창균	061-240-7172	010-3886-9439	cknoh@mmu.ac.kr	2020.04.~ 2022.03.
		부의장	김건우	061-240-7319	010-2735-2528	gwkim@mmu.ac.kr	
		사무처장	장선영	061-240-7352	010-4320-6121	syjang6121@mm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proforg@mmu.ac.kr *전화번호: 061-240-7012, 010-8102-7667 *담당자: 박종식 ■주 소: (58628)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교로 91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협의회					
15	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두진	051-629-5447	010-6357-4263	kdjin@pknu.ac.kr	2020.03~ 2022.02
		부회장	한혜경	051-629-5482	010-5303-8589	hancon@pknu.ac.kr	
		총무이사	허균	051-629-5970	010-9782-0736	gyunheo@pknu.ac.kr	
		재무이사	신인용	051-629-5726	010-3202-0548	shiny@pknu.ac.kr	
		기획이사	안상욱	051-629-6840	010-2090-4669	ahnsangwuk@pknu.ac.kr	
		교학이사	김창우	051-629-6392	010-2574-9842	kimcw@pkn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pknu.ac.kr *전화번호: 051-629-7321 *fax: 051-629-7322 *담당자: 김순주 ■주 소: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학본부 605호					
16	부산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	황홍섭	051-500-7228	010-2621-7567	hongseop@bnue.ac.kr	2019.04~
		부의장	김순식		010-2884-4061	kimss640@bnue.ac.kr	
		총무	조진석		010-9794-3389	dol0425@bnue.ac.kr	
		■*회장님께 직접 연락 *이메일주소: hongseop@bnue.ac.kr *전화번호 *담당자: 회장님께 직접 연락 ■주 소: (4750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거제동),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황홍섭 교수님					
17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한성	051-510-2409	010-2471-2409	hanseongkim@pusan.ac.kr	2019.03~ 2021.02
		수석부회장	윤기현		010-2704-9126	toon@pusan.ac.kr	
		부회장	김기왕		011-340-2712	kingiwang@hanmail.net	
		부회장	김성연		010-5243-8689	suye@pusan.ac.kr	
		사무총장/재정위원장	유진욱		010-5623-6364	jinwook@pusan.ac.kr	
		권익복지위원장	장승철		010-9429-2276	s.c.chang@pusan.ac.kr	
		기획홍보위원장	최송현		010-9163-2931	songchoi@pusan.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chairman@pusan.ac.kr *전화번호: 051-510-1224~5 *fax: 051-515-2236 *담당자: 김태형 ■주 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18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신윤호	02-970-6257	010-7380-0777	yhshinn@seoultech.ac.kr	2019.03~ 2021.02
		부의장	김재수	02970-6706	010-7370-6706	jskim@seoultech.ac.kr	
		부의장	조유진	02-970-6686	010-2213-4459	yujin9027@hanmail.net	
		사무처장	박형철	02-970-6460	010-2419-4785	hcpark@seoultech.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hounok@seoultech.ac.kr, *전화번호: 02-970-6907 *담당자: 김현욱 ■주 소: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501호					
19	서울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박일우	02-3475-2454	010-9271-8354	iwpark@snue.ac.kr	2017.09~ 2019.08 (공석)
		부회장	임희정		010-2638-5347	hjhim@snue.ac.kr	
		총무	김태은		010-7900-7972	tekim@snue.ac.kr	
		총무	홍성두		010-3958-6270	secshsd@snue.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snueprof@snue.ac.kr *전화번호: 회장님께 연락 ■주 소: (066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면로 96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박일우 교수님					

20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조철원	02-880-6079	010-5494-3866	cwcho@snu.ac.kr	2019.3. ~ 2021.04
		수석부회장	이영섭	02-880-8511	010-7310-6676	ysrhee@snu.ac.kr	
		부회장	윤석민	02-880-6470	010-3380-6586	younsm@snu.ac.kr	
			박태성	02-880-8924	010-5557-8924	tspark@snu.ac.kr	
			윤명환	02-880-1403	010-3518-3207	mhy@snu.ac.kr	
			강성춘	02-880-2597	010-6740-7622	sk229@snu.ac.kr	
			이상기	02-880-4647	010-9291-2916	srheesnu@snu.ac.kr	
			고학수	02-880-2602	010-6400-5911	hsk@snu.ac.kr	
			김정용	02-880-7756	010-7927-4103	jyfaust@snu.ac.kr	
			이유리	02-880-6845	010-9084-4465	yulee@snu.ac.kr	
			민은기	02-880-7950	010-2244-7950	-	
			권성택	02-2072-3759	010-5207-3759	stk59@snu.ac.kr	
			김성완	02-2072-3126	010-9012-6513	sungwan@snu.ac.kr	
		백정화	02-880-2322	010-8981-0861	baekjh@snu.ac.kr		
		감사	최윤영	02-880-6137	010-3020-1857	melusine@snu.ac.kr	
			정낙신	02-880-7850	010-6239-3466	lakjeong@snu.ac.kr	
총무이사	이영목	02-880-6117	010-9034-4861	opcit207@snu.ac.kr			
기획이사	노상호	02-880-2333	010-2969-9795	sangho@snu.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snu.ac.kr *전화번호: 02-880-5195 *fax: 02-883-6315 *담당자: 김영남 ■주 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관(60동) 2층 교수협의회							
21	서울시립 대학교 교수회	회장	황은성	02-6490-2669	010-4224-2608	eshwang@uos.ac.kr	2018.9.1.. ~ 2020.8.31
		부회장	박동주	02-6490-2825	010-9485-2303	djpark@uos.ac.kr	
		부회장	이주경	02-6490-2519	010-2413-8650	jookyeong@uos.ac.kr	
		사무총장	김광일	02-6490-2594	010-2402-8000	kikim@uos.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uos.ac.kr *전화번호: 02-6490-6802 *fax: 02-6490-6804 *담당자: 양현미 ■주 소: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 (대학본부 6층 7615호)							
22	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조래철	061-750-3455	010-9207-4575	chorch@scnu.ac.kr	2018.5.~ 2020.4.
		부의장	이상석		010-2776-1187	rumen@scnu.ac.kr	
		사무처장	백소현		010-7596-1155	baeksh@scnu.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sunchon.ac.kr *전화: 061-750-3993 *fax: 061-750-3998 *담당자: 임정미 ■주 소: (57922)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순천대학교 대학본부 6층 교수회(602호실)							
23	안동대학교 교수회	회장	안상준	054-820-5372	010-2857-5185	ph410@anu.ac.kr	2020.3.~ 2022.2
		부회장	박주영	054-820-5403	010-4007-0149	jypark@anu.ac.kr	
		제1국장	김영천	054-820-6810	010-9321-1359	kimyc@anu.ac.kr	
		제2국장	최형우	054-820-5509	010-2354-8914	hwchoi@anu.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anu.ac.kr *전화번호: 054-820-7201 *fax: 054-820-7202 *담당자: 허혜정 ■주 소: (36729)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송천동) 안동대학교 학생회관 6층 A601 교수회							
24	인천대학교 교수회	회장	유병국	032-835-8529	010-9254-8819	bkyoo@incheon.ac.kr	2018.11~ 2020.10
		부회장	정영식	032-835-8433	010-6331-4544	yscst@incheon.ac.kr	
		사무국장	이영애	032-835-8253	010-7758-7024	lae0815@inu.ac.kr	
		사무국장	송찬근	032-835-8291	010-5490-7110	baybreeze119@inu.ac.kr	
		정책국장	김순홍	032-835-8523	010-2241-4116	snow8817@incheon.ac.kr	
■사무실: *이메일: inufa@inu.ac.kr *전화번호: 032-835-8857 *fax: 032-835-8857 *담당자: 서희 실무관 ■주 소: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교수회관 101호 인천대학교 교수회							

25	전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도형	062-530-5000/1894	010-5451-6558	kdhh@jnu.ac.kr	2019.9.1.~ 2021.8.31.
		수석부회장	김근중	062-530-5002/3403	011-9762-9834	gjkim@chonnam.ac.kr	
		부회장	신해진	062-530-3137	010-5202-3914	hshin@jnu.ac.kr	
		부회장	김정선	062-530-4957	010-6530-1805	suji414@jnu.ac.kr	
		사무처장	홍창국	062-530-1907	010-3719-7483	hongck@chonnam.ac.kr	
		부의장	김재형	062-530-5001/5844	010-9676-4419	tmjkim@chonnam.ac.kr	
		기획이사	홍창국	062-530-1907	010-3719-7483	hongck@chonnam.ac.kr	
		총무이사	김정일	062-530-2189	010-8927-9646	kimji@chonnam.ac.kr	
■사무실: *이메일: A5017@jnu.ac.kr *전화번호: 062-530-5003 *fax: 062-530-5004 *담당자: 정재우 ■주 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3층 교수평의회/교수회							
26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창현	063-270-2589	010-6605-2589	leech@jbnu.ac.kr	2019.03~ 2021.02
		부회장	소은선	063-270-2402	010-9498-2802	ses@jbnu.ac.kr	
		부회장	이인재	063-270-3325	010-2678-8781	ijlee@chonbuk.ac.kr	
		감사	임경택	063-270-3200	010-7759-4056	yimkt02@jbnu.ac.kr	
		사무처장	임익태	063-270-4761	010-9691-1507	itim@jbnu.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jbnu.ac.kr, areum97@jbnu.ac.kr *전화번호: 063-270-2011 *FAX: 063-270-2012 ■주 소: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진수당 368호 *담당자: 송나현							
27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태규	063-281-7149	010-5231-8939	tkkim@jnue.kr	2018.03.~ 2020.02. (일단유지)
		부회장	강효진		010-5503-6364	hjkang@jnue.kr	
		부회장	배선아		010-5460-3870	sabae@jnue.kr	
		총무	서현석		010-6430-2266	hsseo@jnue.kr	
■사무실: *이메일주소: tkkim@jnue.kr *전화번호: *fax: 063-281-7151 *담당자: 김태규 ■주 소: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연합회 (과학교육과 김태규 교수연구실)							
28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 장	오홍식	064-754-3283	010-6800-8679	sciedu@jejunu.ac.kr	2018.11.1. ~ 2020.10.31
		수석부회장	고전	064-754-4895	010-5399-7526	koj@jejunu.ac.kr	
		부회장(여교수협의회장)	홍희숙	064-754-3534	010-2693-6208	heesookh@cheju.ac.kr	
		부 회 장	강주영	064-754-2978	010-8910-4908	iuskang@jejunu.ac.kr	
		정책처장	제갈윤석	064-754-3257	010-3181-6804	eejekal@jejunu.ac.kr	
		사무처장	최수석	064-754-3644	010-2499-1769	sooseok@jejunu.ac.kr	
		기획,연구위원장	이창희	064-754-2815	010-6287-7524	changt272@naver.com	
		교권,복지위원장	강영준	064-754-5103	010-2543-2083	jedarm@cheju.ac.kr	
		학사,재정위원장	고창열	064-754-3149	010-7255-2286	kocy@jejunu.ac.kr	
		제도개선위원장	서혜원	064-754-3512	010-4377-7598	fireflyshw@yahoo.com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욱	064-754-2936	010-9245-3820	piarri@jejunu.ac.kr	
■사무실: *이메일: jejuprof@jejunu.ac.kr *전화번호: 064-754-2088 *fax: 064-754-2089 *담당자: 박서림 ■주 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1, 제주대학교) 효담교수회관 2층							
29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강홍재	055-740-1234	010-4436-7732	kanghj@cue.ac.kr	2020.2
		부회장	김경수		010-9466-6803	kimks@cue.ac.kr	
		총무					
■사무실: *이메일: kimks@cue.ac.kr *전화번호: *fax: 055-740-1246 ■주 소: (52673)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진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강홍재 교수님							
30	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류병관	055-213-3208	010-2314-1688	ryu1688@changwon.ac.kr	~ 2021.8.31
		부의장	진교홍	055-213-3657	010-2460-9331	khjin@changwon.ac.kr	
		부의장	유현수	055-213-3682	010-6533-8588	hsryu@changwon.ac.kr	
		사무국장	박능생	055-213-3923	010-2723-0418	nungseak@hotmail.com	
■사무실: *이메일주소: kyosu@changwon.ac.kr *전화번호: 055-213-4705 *fax: 055-213-4706 *담당자: 안혜정 ■주 소: (511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로 20 창원대학교 교수회사무실							
31	청주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대희	043-299-0741	010-6396-8716	handh@cje.ac.kr	2020.04 ~ (일단유지)
		부회장					
		총무					
■사무실: *이메일주소: handh@cje.ac.kr *전화번호: *fax: 043-299-0748 *담당자: ■주 소: (286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 (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한대희 교수님							

32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	의장	이승복	033-260-6523	010-9219-4193	leesb@cnu.ac.kr	2020.03~ 2022.02
		부의장	조순이	033-260-6483	010-7586-1456	music@cnu.ac.kr	
		부의장	유용길	033-260-6471	010-4033-6471	youngyu@cnu.ac.kr	
		■사무실: 사무실 없음. 의장에게 연락바람. *이메일주소:leesb@cnu.ac.kr ■주소: (24326)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26 (석사동 춘천교육대학교)					
33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종성	042-821-5862	010-2730-7319	rambokjs@cnu.ac.kr	2019.03~ 2021.02
		부회장	김정윤	042-821-6419	010-9267-1388	jykim@cnu.ac.kr	
		부회장	류광해	042-821-5833	010-9680-3400	rkhae@hanmail.net	
		사무처장	이승선	042-821-6375	010-3417-7448	girirang@cnu.ac.kr	
		상임운영위원	최인호	042-821-5802	010-9406-4719	iamchoi99@hatmail.net	
		상임운영위원	김형준	042-821-5579	010-6778-4584	bizguru@cnu.ac.kr	
		상임운영위원	김상겸	042-821-5930	010-4717-5494	sangkim@cnu.ac.kr	
		비상임운영위원	양석조	042-821-6859	010-5131-6859	sjyang@cnu.ac.kr	
		비상임운영위원	이정순	042-821-6830	010-5312-8004	jungsoon@cn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prof@cnu.ac.kr *전화번호: 042-821-5091 *fax: 042-822-9637 *담당자: 고육란 ■주소: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본부별관 (E7-1동) 5층 515호							
34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성덕	043-261-3789	010-2470-2742	sdlee@chungbuk.ac.kr	2020.04~ 2022.03
		부회장	류연택	043-261-2694	010-4731-2405	ytryu@chungbuk.ac.kr	
		사무처장	박종석	043-261-3162	010-6470-2922	jpark16@chungbuk.ac.kr	
		기획이사	박명환	043-261-2736	010-4047-9447	mhpark98@chungbuk.ac.kr	
		교학분과위원장	김일화	043-261-2571	010-4206-3010	illhwa@chungbuk.ac.kr	
		법제분과위원장	박일영	043-261-2812	010-2383-2812	parkiy@chungbuk.ac.kr	
		재정분과위원장	이연호	043-261-2215	010-9992-2215	leeyh@chungbuk.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faculty@chungbuk.ac.kr *전화번호: 043-261-3087 *fax: 043-276-8314 *담당자: 권숙희 ■주소: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대학본부(N10동) 7층 701호							
35	한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오호택	031-670-5301	010-4322-5152	oht@hknu.ac.kr	2019.10.1 ~ 2021.9.30
		부회장	조용훈	031-670-5273	010-7309-7632	yhcho@hknu.ac.kr	
		부회장	김혜정	031-670-5364	010-3353-2566	kuri@hknu.ac.kr	
		사무처장	하재원	031-670-5153	010-9638-8426	hjwt@hknu.ac.kr	
		사무처장	이주영	031-670-5213	010-7405-2426	lohawi@hknu.ac.kr	
■사무실: *이메일: eprof@hknu.ac.kr *전화번호: 031-670-5266 *fax: 031-670-5309 *담당자: ■주소: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동) 한경대학교 교수회							
36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평의회	의장	박종률	043-230-3486	010-5459-5265	pjl0703@knue.ac.kr	2020.03~ 2022.02
		부의장	권순희	043-230-3551	010-3450-2293	ksh0225@knue.ac.kr	
		사무총장	김현욱	043-230-3466	010-7196-0820	gold@knue.ac.kr	
		운영위원	이경화	043-230-3544	010-4219-9036	leadread@hanmail.net	
		운영위원	이경택	043-230-3772	010-8143-9376	ktlee@knue.ac.kr	
		운영위원	김용	043-230-3403	010-5759-4132	kyong@knue.ac.kr	
■사무실: *이메일: faculty@knue.ac.kr *전화번호: 043-230-3018(교수지원과) *담당자: 김현욱 교수 ■주소: (2817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평의회							
37	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철원	043-841-5446	010-7233-2639	ycone@ut.ac.kr	2020.03 ~
		부회장	한철희	043-841-5379	010-9143-3574	chhan@ut.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utpa@ut.ac.kr *전화번호: 043-841-5048 *fax: 043-841-5049 *담당자: 김선미 ■주소: (27469)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본관 8층 806호 교수회 사무처							
3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정민승	02-3668-4663	010-2753-0394	msjung@knou.ac.kr	2018.01~
		부회장	변지원	02-3668-4578	010-6380-0368	jwbyun@knou.ac.kr	
		정책국장	장호찬	02-3668-4461	010-2338-4461	hcjang@knou.ac.kr	
		사무총장	이봉민	02-3668-4406	010-7714-5137	leebmin@knou.ac.kr	
		감사	정성희	02-3668-4747	010-7192-1965	sjeong@knou.ac.kr	
■사무실: *이메일주소: leebmin@knou.ac.kr, kyohup@knou.ac.kr *전화번호: *fax: 02-3673-4274 *담당자: ■주소: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MEMO

MEMO

MEMO

MEMO